

연구-2008-0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

2008

제 출 문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귀하

본 보고서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수탁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책임연구자	박진표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동연구자	김영배 (이디알엘케이)
	송기수 (한국옥외광고센터)
	이경아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

본 보고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연구결과임을 밝힙니다.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2
II.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현황	4
1.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 현황	4
2. 인·허가체계 현황	4
3.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5
4.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 현황	7
III.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문제점	8
1.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	8
2. 인·허가체계의 문제점	9
3.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의 문제점	9
4.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관련 문제점	11
IV.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편의 기본 방향	13
1.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	13
1) 전반적 현황	13
2) 개선방안	13
2. 인·허가체계	20
1) 전반적 현황	20
2) 개선방안	20
3.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	23
1) 전반적 현황	23
2) 개선방안	23
4.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	40
1) 전반적 현황	40
2) 개선방안	40

V. 신·구 법안 대비	45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5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	59
VI. 개편 법률(안)	111
1. 옥외광고법	111
2. 옥외광고법 시행령	117
3. 옥외광고조례	142
1) 시·도 옥외광고조례 표준안	142
2)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조례 표준안	163
4. 옥외광고법 개편(안) 종합대비표 (법, 시행령, 조례)	16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현 옥외광고물 법령은 중앙정부차원의 법, 시행령 및 각 시, 군, 구 조례로 구성된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2008년 3월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문 21조와 부칙, 2008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문 47조와 부칙, 그리고 시, 군, 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로 나뉨
- 2005년 6월, 광역시, 도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권한과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16개 시, 도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폐지, 현재 전국 234개 시, 군, 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로 일원화 되어있는 상황임
-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이후, 46년이 지난 2008년 3월까지 13차례 걸쳐 부분적으로만 개정되어왔기 때문에 법령의 구성 및 세부 법령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2007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34만개의 옥외광고물 중 절반이상인 220만개 (전체 51%)가 불법 광고물로 나타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 현 법령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
- 현재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그리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전국의 옥외광고물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중앙집권적이며 규제 위주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면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경관의 한 요소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옥외광고물들의 지역적인 다양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 법령이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체계와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령체계를 광고의 창의성, 경관과의 조화 및 관련 산업발전에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성을 고려한 법령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첫째,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군·구 조례에 대하여 선행 연구와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군·구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고의 창의성, 경관과의 조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법령으로 개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재설정
 -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도권내 수용방안 연구
 - 다양화·세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장소 등에 대한 법 적용범위 재설정
-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단순화 및 인·허가 체계 개선방안 마련
 - 현행 광고물 종류(16종)의 문제점 분석 및 단순화 방안 연구
 - 인가, 허가, 신고배제 광고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광고물 정비방안 마련
 - 옥외광고 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시민참여 확보
 - 옥외광고물 설치 부담금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의 재정적인 규제 방안 연구
 - 광고물별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차별화, 건물주에 대한 책임강화, 광고물 실명제 및 건물면적 총량제 개선방안 연구
-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조례 등의 법령체계 재설정
 -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시행령·조례 간 규정 재설정 및 조례 위임범위 확대 방안
 - 법률, 시행령 및 시도·시군구 조례의 법제화 방안 제시

○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방안 마련

- 옥외광고 산업발전 및 관련 단체연합회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육성방안 연구
- 옥외광고업의 전문화 및 자격제도 개선, 사이버교육제도 도입 등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II.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현황

1.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 현황

□ 옥외광고물의 적용대상과 분류체계

-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상에서 옥외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음
- 현행 분류체계는 옥외광고물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야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 16종으로 분류하고, 광고물의 설치방법, 소재별, 용도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현행의 법체계는 광고물의 종류별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크기와 개수, 소재, 색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인·허가체계 현황

□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로 구분, 허가(신고)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 허가 및 신고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신고) 신청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 후 허가(신고)를 받음
- 또한 허가(신고)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 허가 기간만료 시 연장
-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지역
 -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위한 허가 및 신고지역·장소·물건을 “도시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등으로 규정

□ 수수료

- 광고물 종류별 면적별로 산정,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며 다른 수수료에 비해 고액으로 책정

3.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 현행 법령에서는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유형·설치수량 등에 관계없이 행정처분등을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적용

□ 광고물 관리

- 현 정부와 각 지자체 주도 광고물 개선 및 정비사업의 광고물 설치기준 및 개선방향은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행정기관과 현장파악이 미흡한 일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옥외광고업자의 결격사유

-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방법

- 현행 법령에서는 불법광고물중 고정식 광고물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 기간 내에 불이행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¹⁾하고 있음

□ 금지광고물의 범위

- 옥외광고물로서 표시 혹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광고물로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 규정

1) 불법광고물별로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부과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고, 불법광고물의 조명방법에 따라 부과금액은 단순조명 광고물은 1.5배, 네온, 점멸, 전광광고물은 2배를 적용함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및 실시주체

- 광고물의 설치나 변경 연장 시에 안전도검사 의무화,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가능

□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 광고물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함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례 ('건물면적총량제'의 전국적 확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 다음의 표시방법 특례지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 그 밖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고시 지역

4.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 현황

□ 광고사업협회 설립 및 정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한 광고사업협회의 설립
- 협회의 역할로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 옥외광고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은 위탁 실시 가능

□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강화 (옥외광고사 자격증의 위상 제고 및 옥외광고업 등록 여건의 강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별표2-2)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조건이나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은 따로 명시
-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고려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시설기준 강화 가능

Ⅲ.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문제점

1.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

□ 법령 명칭 및 구조 개편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명칭은 의미 전달에 난해한 점이 있으며, 제목에서의 “~등”(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옥외광고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모호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구조는 관련이 있는 법 조문끼리 관련조로 연결되어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때로는 관련 조끼리의 관련성이 희박해 보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경우는 장의 구분이 없이 전문 21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 반하여 시행령은 총8장 전문 47조로 구성되어 있어 법과 시행령간의 구성의 일관성이 없음 또한 장의 구분도 몇 개의 관련 있는 조문을 묶는 역할 만을 하고 있어 단순한 분류를 넘어선 구분을 통한 의미부여의 개념이 필요함

□ 옥외광고물의 적용대상과 분류체계

- 변화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소재, 신형태의 광고물을 수용하고 이정표, 안내판, 예술품, 익스테리어(exterior) 등 공공의 환경에 노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홍보)수단을 수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의 새로운 정의와 합리적인 분류체계의 개편을 요함
- 현행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는 공공의 환경에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는 매체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매체를 수용하기에 부적합함
- 현행 분류체계는 광고물의 설치방법, 소재별, 용도별 분류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혼재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난해하고, 소 분류법에 의한 분류로서 법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광고물형태의 출현은 곧 불법광고물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분류라기보다 옥외광고물 종류의 단순한 나열 성격에 가까움
-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지나친 규제는 도시미관 및 지역적 경관문화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 규제로 지역적 상징과 특성 표현을 제한
- 시행령에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적 특색 반영이 불가하고 새로운 형태 광고물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표시방법 표현이 “~할 수 있다”로 획일적, 창의적인 광고물 디자인을 기대하기 어려움

2. 인·허가체계의 문제점

□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 허가와 신고 사항 산재, 예외사항이 곳곳에 나열,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의 요건’ 구분 난해
- 광고물심의 및 안전도검사에 약 3~4회의 절차를 거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허가(신고)절차 및 관리를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어려움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지역 범위확대
 -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장소·물건이 예외 지역·장소·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 존재

□ 수수료

- 종류별·면적별 산정으로 계산방법 복잡,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므로 동일 생활권내 금액, 계산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혼선 존재
- 타 수수료 보다 고액으로, 민원처리 수수료라기보다는 부담금개념이 강함

3.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의 문제점

□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 현행 법령상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유형·설치수량 등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등을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적용하여, 광고물의 정비·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이는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도시미관 저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광고물관리

- 행정기관과 현실 상황과악이 부족한 전문가들의 주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강한 반발이 발생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으며, 사업초기 일시적·단기간의 개선효과 이후 점차 개선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정비와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옥외광고업자의 결격사유

-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규정 부재,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대한 제한 규정만 존재함에 따라 불법행위 만연

□ 이행강제금의 부과방법

- 대다수의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 및 광고업자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광고효과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비용보다 더욱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 적발 후,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 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 금지광고물의 범위

- 현행 규정상, 도로교통안전 관련 옥외광고물만 표시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외에 옥외광고물의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고려의 필요성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명칭 변경

- 안전도검사라는 용어는 안전에 관한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하여 안전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용어의 정의대로라면 정확한 수치계산이나 정밀한 계측도구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안전도검사의 경우 기술적이고 정확한 검사라기보다는 옥외광고물의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수준임
- 따라서 현행 ‘안전도검사’라는 명칭은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평가기준과 지표를 통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현실상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만 제기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며, 법령 내 에서도 안전도검사에 관한 정확한 명칭의 정의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최근에는 바람, 태풍, 지진 등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추락, 낙하, 붕괴사고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옥외광고물의 구조안전 및 안전시공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측정 역시 필요한 상황임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및 실시주체

-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도 검사 대상을 분류, 광고물 크기가 대형이라도 안전도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발생, 기초자치단체별로 안전도 검사 대상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
- 동일생활권내 안전도검사의 위탁단체가 상이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도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가 유발되고 있음
- 일정높이 이상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경우,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시민 및 차량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 존재
- 안전도검사의 주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있어 법령의 실효성 확보 위해 실시 주체를 시장·도시사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광고물 실명제

- 광고주와 광고업종사자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 역할뿐 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임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례 (‘광고물총량제’의 전국적 확대)

-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법상 신행정수도 등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광고물총량제를 전국적 확대 필요성 제기
- 광고물총량제를 통해 기존의 ‘업소 중심의 광고물 관리’에서 ‘건물 중심의 광고물 관리’로 전환 가능

4.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관련 문제점

□ 광고사업협회

- ‘옥외광고협회’의 지방조직 ‘독립단체화’ 진행에 따라 16개의 독립단체 이외 협회, 현행 직능단체 및 새롭게 신설 될 다양한 직능단체, 유관단체간의 분류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다양한 직능단체의 행정적 지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단체연합회’ 설립, 단체연합회 직무 역할조정으로 사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규 통제

□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현행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도지사로 변경, 교육의 질 제고 및 행정적 편의 도모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옥외광고사 자격증의 위상 제고 및 옥외광고업 등록 여건의 강화)

- 현행법상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옥외광고사 자격증 취득자 외 이중 자격증 취득자도 가능, 광고물 제작 특수성 및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 야기가능성, 이중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업 자격 요건 강화 필요
-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에 있어 옥외광고업 가능자의 등록 여건 현실화로 사업의 질 제고

IV.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편의 기본 방향

1.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

- 법령 명칭 및 구조 개편
- 옥외광고물의 적용대상과 분류체계

1) 전반적 현황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서 옥외광고물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제13조~제32조의2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소재와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 및 이정표, 안내판, 예술품, 외부장식 등 공공환경에 노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홍보)수단을 옥외광고물의 영역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광고물 총량제를 대비하여 건물의 입면 구조와 형태에 어울리는 광고물을 적용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를 필요로 함

2) 개선방안

법령 명칭 및 구조 개편

- 도입방향
 - 개정안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명칭을 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옥외광고법”과 “옥외광고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함
 - 따라서 개정안에는 관련조의 구성을 배제하고 될 수 있는 한 같은 조로 편입하여 내용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견지하였고, 법은 총7장 전문 30조, 시행령은 총6장 전문 45조로 구성하여 법과 시행령간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장의 구분은 각각 총칙, 옥외광고물관리, 옥외

광고업 관리, 옥외광고 진흥, (수수료) 및 부담금, 행정처분, 벌칙 등으로 하여 법 조문의 배열 순서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 구성의 일관성을 느끼도록 함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 선 안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신설) (신설)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8조(적용배제)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제2장 옥외 광고물 관리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3(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3장 옥외 광고업 관리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4장 옥외 광고 진흥
	제17조(수수료) (신설)	제5장 수수료 및 부담금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청문) 제20조(과태료)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의2(이행강제금)		제6장 행정 처분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규정) 제21조(적용상의 주의)	제7장 벌칙 등	

	현 황	개 선 안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신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4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등)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제1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29조(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제6장 안전도검사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제39조(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5조(허가의 기준) (삭제) (삭제) (삭제) 제6조(허가의 절차) 제6조제2항 제7조(일반적 표시방법) 제8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항 (시도조레이동) 제8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 제9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 (삭제) 제11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항 제12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 (시도조레이동) (시도조레이동) 제13조(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4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제15조(광고물 총량제) 제16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범위) 제17조(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9조(세금감면) 제20조(예산지원) 제21조(허가 업무의 위탁) 제22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 제22조제3항제2호 제22조제3항제1호
	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제41조제2항 제41조의2(광고사업협회의 정관) 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3조(교육의 위탁)	제2장 옥외 광고물 관리	제3장 옥외 광고업 관리

	현 황	개 선 안
시행령	제5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35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조직) 제34조(위원회의 기능)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제36조(수당과 여비)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 익금 배분 등) 제37조의3(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제4장 옥외 광고 진흥 제31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2조(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3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제34조(수당과 여비) (삭제) 제35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신설) (신설) (신설)	제5장 부담금 제36조(기금조성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 제38조(부담금의 감면) 제39조(부담금의 부과실적 등 제출)
	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 제43조의2(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제46조(과태료의 부과) 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0조의4(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8장 벌칙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6장 행정 처분 제40조(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제41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제42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제43조(과태료의 부과) 제4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항~제4항 제4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제5항, 제6항 제4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제7항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옥외광고물의 적용대상과 분류체계

-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및 옥외광고업에 대한 정의 수정
 - 제품이나 용역의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간판, 광고물, 이정표, 안내판, 예술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 및 외부장식(exterior)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매체를 포함하여 확장
 -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표시·설치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모든 종류의 매체를 의미함
 - 옥외광고업을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확장하여 포함하도록 하였음
-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 단순화
 - 현재 단순하게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나열한 분류체계를 분류기준의 통일성을 기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분류, 기존의 16개의 분류

에서 6가지로 분류 (벽면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광고물, 공공광고물, 교통광고물, 기타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 시행령 상 옥외광고물의 새로운 분류 외에 옥외광고물의 세부 종류 및 표시방법에 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 지역 장소에 적합하도록 별도 관리
- 시행령 상에는 광고물 설치면적,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
- 일반적인 표시방법중 추가적인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 지역특성 및 일상생활 활동 범위 내 일관성을 확보, 광고물의 종류 따른 표시방법은 최소한 금지사항만을 언급
- 공공시설물중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은 동일생활권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따라 편의시설물 지정 시 혼란 초래가능성, 구 제외
- 광고물 전기사용에 따른 주거생활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제기,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 어려움, 심의를 통한 현장여건 확인 및 결정 필요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표시·설치(이하"표시"라 한다)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모든 종류의 매체를 말한다. 다만, 건물 등에 조명만을 사용하여 광고내용을 표출하지 않거나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매체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다.</p> <p>2. "게시시설"이란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3.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을 직접 제작·표시·임대하거나 또는 그 표시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p> <p>4.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현 황	개 선 안
시행령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형간판 (내용은 생략) 2. 세로형간판 (내용은 생략) 3. 돌출간판 (내용은 생략) 4. 공연간판 (내용은 생략) 5. 옥상간판 (내용은 생략) 6. 지주이용 간판 (내용은 생략) 7. 현수막 (내용은 생략) 8. 삭제 9. 애드벌룬 (내용은 생략) 10. 벽보 (내용은 생략) 11. 전단 (내용은 생략)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내용은 생략)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내용은 생략)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내용은 생략) 15. 선전탑 (내용은 생략) 16. 아취광고물 (내용은 생략) 17. 창문이용 광고물 (내용은 생략) <p>제4장 표시방법 제13조~제32조의2</p> <p>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4조(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 삭제 제1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18조 삭제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21조삭제 / 제22조삭제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24조삭제 / 제25조삭제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p> <p>5. 그 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p> <p>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9조(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p>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 :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2. 옥상광고물 :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과 승강기 탑 등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3. 지주광고물 : 지면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4. 공공광고물 :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5. 교통광고물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6. 기타광고물 :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옥외광고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p>제4장 표시방법</p> <p>제7조(일반적 표시방법) 제8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p> <p>제9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p> <p>제11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p> <p>제12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p> <p>제13조(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4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제15조(광고물 총량제)</p>

	현 황	개 선 안
시·도 조 례	<p>※ 기존 시행령의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제32조 중 중분류 표시방법 이외의 세부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안으로 수정</p>	<p>제5조(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6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제8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 제9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0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1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2조(창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제16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제18조(광고물 총량제)</p>

2. 인·허가체계

- 옥외광고물의 허가
- 수수료

1) 전반적 현황

-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인·허가 체계는 허가와 신고로 구분,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 허가 및 신고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고 예외사항이 곳곳에 나열되어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의 요건을 구분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 수수료는 광고물의 종류, 면적별로 기초지자체에서 선정, 계산법이 복잡하고 동일 생활권에서 조차 혼선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수수료에 비하여 고액임

2) 개선방안

옥외광고물의 허가

- 허가·신고로 구분된 사항을 허가로 통일 (전단, 벽보, 현수막 등도 내용에 따라 허가거부가 가능하도록 추진) 다만, 허가기간이 30일 이내 등 짧은 광고물에는 허가처리 기간 단축추진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허가절차 및 관리권한을 부여,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
- 광고물등의 허가 지역 등 범위확대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를 위해 허가지역·장소·물건을 전국 모든 지역·장소·물건으로 확대 (명시규정 삭제)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1. ~ 6.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4조(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①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 6. (삭제)</p>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광고물의 실명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통수단이 2 이상의 시·도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허가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허가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p>

□ 수수료

- 종류별·면적별 산정 지양
- 타 법령 수수료와 동일하게 비용징수 (건별 산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책정,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혼선 배제

【 법률개선방안 】

개선안	
시·도 조례	<p>※ 현행 시·군·구 조례를 인용하여 시·도 조례로 변경함 시·군·구 조례 제11조(수수료) → 시·도 조례 제35조(수수료) 제35조(수수료) ①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6,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3.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 도입
- 주민협의회 및 광고물관리 자율관리지역 도입
- 옥외광고업자의 결격사유 강화
- 이행강제금의 부과방법 등 강화 보완
- 금지광고물의 범위확대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명칭 변경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및 실시주체의 격상
- 광고물 실명제
- 광고물총량제

1) 전반적 현황

- 현행 법령상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유지에 관한 사항들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경직되게 적용,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 법령실효성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좀 더 현실적용이 가능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광고물 실명제를 비롯한 새로 확대 도입되는 제도(광고물총량제)의 정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법령의 마련 필요성

2) 개선방안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 도입

○ 필요성

- 현재 사업체들은 건물 내 상가의 수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광고물보다 더 크게, 수량은 많게, 조명은 밝고 현란하게 옥외 광고물을 표시하여야만 광고효과가 높아 영업이 잘된다는 사고로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는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유형·설치수량 등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등을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정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사업체에서 설치코자하는 옥외광고물의 크기·수량·전기사용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차등화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으로써 사업체 스스로 크기, 수량 등을 제한하여 표시토록 유도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의 정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

나 라	내 용
이탈리아	- 1년단위로 구분하여 면적(1㎡당)에 따라 유형별 상이하게 부과 - 3개월 이하는 세금의 1/10 적용 - 발광광고물은 100% 부과세 추가부과 등
태 국	- 태국어 표시 광고물과 외국어, 사진, 표식혼용 표시 광고물에 따라 ㎡별로 각각 다른 세율로 부과
싱가포르	- 옥외간판설치 면허증 제도를 두어 광고물의 유형별·면적별 (1㎡당)로 1개월 단위로 면허세 부과(허가비 별도)
일 본	- 네온사인, 전광판광고에 표시면적 3.3㎡이상 면적별로 보통세로 부과한 경우가 있었음

○ 현 행 유사한 부담금

법 명	내 용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해양환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절 제19조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하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의3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 도입방향

-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관리와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코자 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은
- 옥외광고물중 규모가 소형이거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단순하고 일회성인 광고물을 제외하고, 벽면·옥상·지주광고물 등의 고정식으로 부착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토록 하되,
- 사업체별 최소한의 옥외광고물, 자율관리지역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음

【 법률개선방안 】

신설 내용	
법	<p>제20조(광고물 표시 부담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부과대상·부과기준·부과금액·부과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의 난립방지와 도시미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등이 광고물을 표시한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p> <p>④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p> <p>⑤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이 표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30을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배분한다.</p> <p>⑦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⑧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 신설시행령: "V. 신·구 법안 대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도조례 개정안" 참고</p> <p>제37조(부담금의 부과) 제38조(부담금의 감면) 제39조(부담금의 부과실적 등 제출)</p>
시·군·구 조례	<p>※ 신설 조례: "V. 신·구 법안 대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도조례 개정안" 참고</p> <p>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7조(부담금의 납부기간) 제38조(부담금의 감면)</p>

□ 주민협의회 및 광고물관리 자율관리지역 도입

○ 필요성

-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개선 및 정비사업들은 모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보고자 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와 개선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행정기관과 국내의 광고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전문가 집단 중심의 다소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기준과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단기간에 추진하고 있음
-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마지못해 따라오는 형태의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단기간의 개선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정비와 재설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임
- 따라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며,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하나가 되어 장기간에 걸쳐 서로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개선을 통해 지역단위의 주민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광고물관리 주민협의회 도입이 필요함

○ 주민협의회 도입사례

국 가	법 명	주 요 내 용
국 내	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 운영 (제4장 경관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전원합의로 작성한 경관협정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경관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면 경관협정을 인가할 수 있음
일 본	옥외광고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협정지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구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의하여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시한 광고협정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면 광고협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입방향

-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임시구성하여 2분의 1이상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고 주민협의회를 구

성하여, 자율관리지역으로 신청하여 지정 고시를 득함. 고시이후,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율 정비 및 지속적 유지·관리 활동 전개

- 지역 옥외광고 관련단체와 주민협의회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광고물 개선과 불법 광고물 근절 활동 수행
- 행정기관에서는 주민협의회와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참여 사업체에 재산세,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 등의 감면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현행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위원회”로 변경, 역할 및 기능 보완 개선, 광고물 심의 등의 기능 및 지속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한 주민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언, 권고, 자문 등 복합적인 기능 수행, 광고물 관리지역별 소위원회 설치로 광고물 개선,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
-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 또는 당해 지자체의회의원이 포함되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률개선방안 】

▶ 옥외광고위원회관련

	현 황	개선안
법	<p>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15조(옥외광고위원회) ①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황	개 선 안
시행령	<p>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생략)</p> <p>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的人数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시·군·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⑧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시·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p> <p>⑩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시·도"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p>	<p>제33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的人数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디자인·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언어·디자인·색채 등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4.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언론매체 대표 5.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③·④ (현행 동일)</p> <p>⑤시·도 위원회에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시·도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시·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⑨시·도 위원회는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는 시·군·구로, "시·도 조례"는 "시·군·자치구조례"로 본다.</p>

	현 황	개선안
시행령	<p>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계속] (신설)</p> <p>⑩시·군·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p>	<p>제33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등) [계속]</p> <p>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자율관리지역 주민협의회 임원 2. 당해 자율관리지역이 속하는 동의 주민자치 위원 3. 그 밖에 광고물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p>⑫그 밖에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 자율관리지역관련

	신설 내용
법	<p>제5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고물의 수량과 표시규격 등 광고물 표시기준을 주민자율로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 따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지정 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제6조(세금감면 및 예산지원)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또는 사업자소득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관리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광고물 디자인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시행령	<p>※ 신설시행령: “V. 신·구 법안 대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도조례 개정안” 참고</p> <p>제16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범위)</p> <p>제17조(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절차 등)</p> <p>제1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p> <p>제19조(세금감면)</p> <p>제20조(예산지원)</p>
시·도 조례	<p>※ 신설 조례: “V. 신·구 법안 대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도조례 개정안” 참고</p> <p>제19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취소 및 변경절차 등)</p> <p>제20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p> <p>제21조(세금감면 신청 절차 등)</p>
시·군·구 조례	<p>※ 신설 조례: “VI. 개편법률(안)- 3. 옥외광고조례” 참고</p> <p>제7조(예산지원 신청절차 등)</p>

□ 옥외광고업자의 결격사유 강화

○ 필요성

-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등)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으므로
-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되어야 옥외광고업 등록자격이 부여됨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 광고주의 편의제공과 영업의 이윤추구만을 내세워 광고물을 설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광고주의 제작·설치 요청이 있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의 제한규정(결격사유)

구 분	법 및 주요내용
자격부여 경과기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산후조리원 폐쇄) / 제15조의2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록취소의 등) /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음
자격부여 경과기간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 제13조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 ●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의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지적법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제41조의4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 제9조의2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

구 분	법 및 주요내용
자격부여 경과기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5조 (자격의 취소)/ 제6조 (결격사유):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 (자격의 취소)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음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영업정지)/ 제6조 (결격사유): 결혼중개업 등록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 (영업정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자격부여 경과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2조 (시정조치)/ 제14조 (결격사유) :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없음

○ 도입방향

- 옥외광고업 등록 취소자에 대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자격부여 경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 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u>1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제 1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u>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행강제금의 부과방법 등 강화 보완

- 불법광고물의 표시·설치에서 얻는 광고효과가 체재수단인 이행강제금보다 크다는 인식, 불법광고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연간 부과회수 및 부과금액의 상향조정
 - 부과회수 : 현행 연간 2회 이내에서 조례를 통하여 연간 5회이내로 따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 사업체별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금액을 2천만원이하로 규정토록 신설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관리자(제26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받는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회에 불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은 1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p>	<p>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하“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신설)	<p>③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p>	<p>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④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⑤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⑤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p>	<p>⑥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⑦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행강제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p>

	현 황	개 선 안
시행령	<p>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 및 지주광고물: 300만원 이하 2. 옥상광고물 및 공공광고물: 500만원 이하 3. 교통광고물(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및 기타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500만원 이하 <p>②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된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이행강제금 금액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p> <p>⑤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금지광고물의 범위확대

○ 기대효과

- 보행자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광고물과 파손되었거나 붕괴·추락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방

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명랑한 거리질서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오염되었거나 변색된 옥외광고물의 추방으로 건물의 미관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입방향

- 차량 및 보행자 안전 도모를 위해 파손 및 붕괴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광고물에 추가
- 거리경관 고려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 변색 등으로 미관저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또한 금지광고물에 포함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5조(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p> <p>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u>광고물등</u> (신설) (신설)</p>	<p>제7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p> <p>①누구든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광고물과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p> <p>1. 표시할 수 없는 광고물</p> <p>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색깔 또는 형태의 광고물</p> <p>나.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p> <p>다. 파손되었거나 붕괴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p> <p>라. 오염되었거나 변색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p> <p>2.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p>
	<p>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p> <p>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p> <p>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p> <p>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p>	<p>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u>내용</u></p> <p>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u>아름답고 좋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생활습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u></p> <p>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보호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u>내용</u></p> <p>라.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u>내용</u></p> <p>마.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u>내용</u></p> <p>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u>내용</u></p>

	현 황	개선안
법	<p>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7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 [계속]</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p>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명칭 변경

- 안전도검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서 쓰이는 용어인 ‘안전점검’으로 명칭 변경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확인수준의 검사에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뿐 만 아니라, 명칭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 민원인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임

□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위탁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위해발생 시 신속 대처, 적절한 보상 강구
-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확대(도료나 비닐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광고 내용을 표시한 비닐·천·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건물 등에 밀착하여 직접 부착하거나 배부 또는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 일부내용</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제9조(안전점검) ①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③제2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p>
시행령	<p>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불링판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5의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5의3.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p>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등에 광고내용을 직접 표현한 광고물 2. 광고내용을 표시한 비닐·천·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건물 등에 밀착하여 직접 부착하거나 배부 또는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3.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개선안	
시·도 조례	※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조례를 인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변경함 제24조(안전점검) 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26조(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 격상

- 동일생활권내 안전도검사의 위탁단체가 상이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도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가 유발되어 법령의 실효성 확보 위해 실시 주체를 시장·도시사로 격상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시행령	<p>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p> <p>(신설)</p>	<p>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이하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p>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각 1인 이상.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각종 실측·점검장비 및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p>③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 **광고물 실명제**

- 광고물 실명제 운용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격상, 표시방법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정, 혼선을 피하고 운용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법	<p>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조(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중 제3항</p> <p>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광고물의 실명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 **‘광고물 총량제’**

- 향후 광고물총량제의 전국적 확대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례)를 시행령 제15조 (광고물 총량제)로 명칭 변경
- 총량제 실행 시 우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건물면적을 총량제로 제한하였을 경우, 건물면적은 넓은데 반해 상가의 수가 적을 수 있으므로
- 이때 광고물의 난립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선안
시행령	<p>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1.~6. (생략)</p>	<p>제15조(광고물 총량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규모에 따른 건물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p> <p>1.~6 (현행 유지)</p>

개선안	
시·도 조례	<p>※ 건물 면적이나 방법은 시·도조례 표준안에 제시하도록 함</p> <p>제18조(광고물 총량제) ①영 제15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물정면 입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는 건물 정면 입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p> <p>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신청은 당해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③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전에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광고물표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 받을 수 있다.</p>

4.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육성

- '옥외광고 관련 단체' 신설
- 교육 주체 변경
-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강화 (옥외광고사 자격증의 위상 제고 및 등록 여건의 강화)

1) 전반적 현황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광고사업협회 설립 및 정관규정 명시,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기초 마련, 옥외광고물에 대한 교육 및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서의 자격기준 강화 및 등록여건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2) 개선방안

'옥외광고 관련단체'의 신설

-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해 '광고사업협회' 설립을 '옥외광고 관련 단체' (옥외광고 관련 직능단체, 직능단체의 원활한 업무 및 소통 역할) 설립으로 수정
- 설립관련 조직,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련 단체의 업무를 시행령으로 규정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 선 안
법	<p>제11조의3(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p>④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p>⑤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2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설립) ①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령 등에 관한 교육 등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p>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필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p>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각 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옥외광고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p>

□ 교육 주체의 변경

- 광고물에 관한 교육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대상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숙지되어야 할 법령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자, “법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교육 과목의 명칭을 수정함
-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경우 뿐 만 아니라 안점점검 위탁자에게도 법령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점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에도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광고업 종사자나 위탁자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온라인교육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향후 상시 사이버 교육을 통한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효율적인 교육방안 마련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 선 안
법	<p>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및 디자인·설계·시공, 안전점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신설) <p>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p> <p>제43조(교육의 위탁)</p> <p>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p>	<p>제29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2. 옥외광고업자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신규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 4. 관계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p>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내용·시간·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30조(교육 업무의 위탁)</p> <p>②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개선안	
시·도 조례	<p>제28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종사자 또는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p>③시·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시·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⑥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

- 현행에는 동일한 기술능력과 시설요건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옥외광고물의 기본 목적인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요건에 따라 영업범위 구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술능력과 시설기준 요건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급 구분 방안을 마련함

【 법률개선방안 】

	현 황	개 선 안
시행령	<p>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 시행령의 별표의 내용</p> <p>별표2-2</p> <p>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p> <p>시설: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p>	<p>제26조(등록의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자격과 시설기준은 별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표3

종별	영업범위	기술자격	시설요건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액 1,000만원이상의 제작 및 설치공사 • 옥외광고 매체대행 • 광고물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철물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도 포함), 건축, 전기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 99.9제곱미터이상 (공장등록필) • 사무실 33.3제곱미터이상 • 종업원 7인 이상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액 1,000만원미만의 제작 및 설치공사 • 옥외광고 매체대행 • 광고물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도 포함) 또는 건축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 33.3제곱미터이상 • 사무실 16.5제곱미터이상 • 종업원 3인 이상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 매체대행 • 광고물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증(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도 포함) 소지자 각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16.5제곱미터이상 • 종업원 1인 이상

V. 신·구 법안 대비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u>설치·표시</u>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u>위해</u>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u>표시되어</u>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u>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u>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p>(신설)</p> <p>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u>와</u>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u>표시·설치</u>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u>시각공해와</u> <u>위해</u>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u>표시·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되어</u>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u>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모든 종류의 매체</u>를 말한다. 다만, 건물 등에 <u>조명만을 사용하여 광고내용을 표출하지 않거나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매체</u>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2. "게시시설"이란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을 직접 제작·표시·임대하거나 또는 그 표시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u>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2조 제7호에 따른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u>와</u>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p><u>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u></p> <p>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케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u>옥외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성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u></p> <p>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7. 우수 옥외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광고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등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장 옥외광고물 관리</p> <p>제4조(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①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광고물의 실명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	--

<p>②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통수단이 2 이상의 시·도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허가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⑥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허가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p>
<p>(신설)</p>	<p>제5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고물의 수량과 표시규격 등 광고물 표시기준을 주민자율로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제1항 따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지정 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6조(세금감면 및 예산지원)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또는 사업자소득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관리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광고물 디자인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 ①누구든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광고물과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p>
<p>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p>	<p>1. 표시할 수 없는 광고물 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색깔 또는 형태의 광고물</p>
<p>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p>	<p>나.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다. 파손되었거나 붕괴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p>
<p>(신설)</p>	

<p>(신설)</p> <p>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p>라. 오염되었거나 변색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p> <p>2.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p> <p>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p> <p>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아름답고 좋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생활습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p> <p>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보호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p> <p>라.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p> <p>마.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p> <p>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p>
<p>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p>제8조(적용제외 및 특례) ①비영리 목적으로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2.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축제 또는 행사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물 5. 국가등에서 축제 등 각종 행사와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p>(신설)</p> <p>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p>	<p>②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국가등에서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광고물의 표시관련 특례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 표시위치 및 광고물의 종류·수량·규격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p>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p>	<p>여 특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 3. 국가등에서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안내 등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p>
<p>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안전점검) ①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p>(신설) 일부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제2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옥외광고업 관리</p>
<p>(신설)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과 시설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③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③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을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업무를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개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로 영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산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p>
<p>④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⑤옥외광고업자는 그 영업소 안에 광고물의 제작·설치 등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⑤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⑥옥외광고업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장 밖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⑥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⑦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p>
<p>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p>	

<p>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관풍차·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제11조의3(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제12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설립) ①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p>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령 등에 관한 교육 등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p>④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④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필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p>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p>	<p>⑥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및 디자인, 설계·시공, 안전점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옥외광고 진흥</p>
<p>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p>	<p>제1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 ①광고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p>

<p>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옥외광고센터에서 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광고물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p>③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5조(옥외광고위원회) ①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제16조(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광고물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②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p>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p>외국기술의 도입</p> <p>3. <u>옥외광고물에</u>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p> <p>4. <u>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u></p> <p>5. <u>옥외광고</u>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p> <p>6. 옥외광고에 <u>관한</u>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p> <p>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p> <p>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p> <p>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옥외광고물</u>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⑦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p> <p>⑧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⑨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⑩행정자치부 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u>한국옥외광고센터</u>가 이를 수행한다.</p> <p>⑥제4항에 따른 <u>광고물</u>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광고물</u>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외국기술의 도입</p> <p>3. <u>광고물</u>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p> <p>4. <u>옥외광고</u>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p> <p>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p> <p>6. 옥외광고 <u>관련 사항</u>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p> <p>7.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옥외광고사업</p> <p>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p> <p>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광고물</u>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⑦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p> <p>⑧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⑨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⑩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①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제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금지·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광고물</u>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을 제외한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u>센터</u>가 이를 수행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u>광고물</u>의 위치·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u>광고물 표시기준</u>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광고물</u>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	---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신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신설)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배분비율·용도 및 그 밖의 수익금의 배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옥외광고 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광고물 관리업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도 옥외광고 기금(이하 "시·도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도 기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로 배분되는 수익금
 - 나.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 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라.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2. 시·도 기금은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로경관의 개선·법령 등에 관한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군·자치구 옥외광고 기금(이하 "시·군·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 나.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 다.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 라. 제2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 마.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 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사.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의 보조금
2.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은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로경관의 개선·법령 등에 관한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수수료 및 부담금

제19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 등록 신청시에 각각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4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허가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안전점검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제20조(광고물 표시 부담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필

	<p>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부과대상·부과기준·부과금액·부과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의 난립방지와 도시미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등이 광고물을 표시한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p> <p>④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p> <p>⑤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이 표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30을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배분한다.</p> <p>⑦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채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⑧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3조(허가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때 3. 제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때 4.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때 	<p>제6장 행정처분</p> <p>제21조(허가의 취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 3. 제7조 따른 광고물의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5.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p>(신설)</p> <p>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p>제22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표시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제15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신설)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청문)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광고물 표시에 대한 허가 소
2.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전점검을 신청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
5. 제10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
7.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이하 "처분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처분당사자는 처분권자로부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처분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처분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⑧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 통보를 받은 법원은 즉시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⑨ 처분권자는 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처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⑩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p>	<p>⑪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p>
<p>③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5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그 광고물의 표시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관리자·대리인(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의 제거·보완·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중 광고물관리자의 전화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2.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 3.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허가사항 이외의 싸인볼·조명튜브·통신안테나·간접조명기구 등을 부착하였거나 안전사고와 화재위험 등이 우려되는 광고물 4. 제5조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 5.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 6.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 7.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받은 광고물
<p>② 처분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광고물관리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고한 후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붕괴·추락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처분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광고물관리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고한 후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붕괴·추락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중 광고물관리자의 전화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p>

<p>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⑥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p>	<p>⑦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p>
<p>제13조(허가 취소 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⑧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과 제2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광고물의 광고물관리자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⑨제8항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 제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처분권자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관리자(제26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받는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은 1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고하여야 한다.</p>	<p>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하 "처분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신설)</p>	<p>③처분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p>

<p>③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p>	<p>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⑤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p>	<p>⑤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⑥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⑥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신설)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행강제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p>
<p>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p> <p>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p> <p>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p>	<p>제7장 벌칙 등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 다만,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p> <p>2.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p> <p>3.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p>
<p>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삭제)</p>
<p>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21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30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시·도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현행	옥외광고법시행령 개정안	시·도조례표준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p>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p>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옥상)과 기둥, 벽이 있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차고와 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p> <p>2. “벽면”이란 건물의 바깥면을 말한다.</p> <p>3. “정면”이란 도로폭이 3미터 이상인 보행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막다른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고 개별 업소 또는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p> <p>4. “광고내용”이란 성명·상호·상표·상품 및 영업내용(이미지·그림 및 사진을 포함한다)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말한다.</p> <p>5. “표시”란 옥외광고물 또는 그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광고내용을 직접 부착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p> <p>6. “자기광고”란 광고내용 중 자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7. “상업광고”란 자기광고 이외의 모든 광고를 말한다.</p>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p>1. 벽면광고물 :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조례표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타광고물의 분류)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기타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p>1. “애드벌룬”이란 기구 등에 직접 표시하거나 건물 및 지면 등에 매달아 공중에 띄워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2. “창호광고물”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창호나 건물의 유리면에 직접 표시하거나 매체를 이용하여 창호나 건물의 유리면을 통하여 공중에게 보이도록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시하는 광고물</p> <p>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p> <p>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p> <p>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로 표시하는 광고물</p> <p>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p> <p>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p> <p>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p> <p>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p> <p>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p> <p>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p> <p>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p>	<p>2. 옥상광고물 :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과 승강기 탑 등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3. 지주광고물 : 지면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4. 공공광고물 :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3. “현수막” 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고정되게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4. “현수기” 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그 일부만 고정시켜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5. “벽보” 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6. “전단” 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	--	---

<p>13. <u>교통시설이용 광고물</u>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p> <p>14. <u>교통수단이용 광고물</u>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p> <p>7. <u>현수막</u>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p> <p>8. <u>삭제</u></p> <p>9. <u>애드벌룬</u>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p> <p>10. <u>벽보</u>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p> <p>11. <u>전단</u>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p> <p>17. <u>창문이용 광고물</u>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p>	<p>5. <u>교통광고물</u>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p> <p>6. <u>기타광고물</u> :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옥외광고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p>
<p>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p> <p>가. 지하도</p> <p>나. 철도</p> <p>다. 지하철</p> <p>라. 공항</p> <p>마. 항만</p> <p>바. 고속국도</p> <p>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p> <p>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제4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p> <p>가. 지하도</p> <p>나. 철도</p> <p>다. 지하철</p> <p>라. 공항</p> <p>마. 항만</p> <p>바. 고속국도</p> <p>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p> <p>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p> <p>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p>

<p>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p> <p>다. 「선박법」에 의한 선박</p> <p>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②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허가 및 신고</p> <p>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 <p>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5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나. 한 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p>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p> <p>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p> <p>마. 「항공법」 제2조제1호·제25호·제25의3호에 따른 비행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p> <p>(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옥외광고물 관리</p> <p>제5조(허가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표시가 법 제7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7조부터 제15조에 적합할 것 3.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기타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p>(삭제)</p>	<p>제3조(기타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영 제5조제3호의 단서에 따른 기타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과 같다.</p>
--	--	--

<p>7. <u>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u></p> <p>8. <u>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u></p> <p>9. <u>선전탑</u></p> <p>10. <u>아취광고물</u></p> <p>11. <u>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u></p> <p>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다.</p> <p>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u>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u></p> <p>2. <u>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u></p> <p>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p> <p>1. <u>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u></p> <p>2. <u>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3. <u>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u></p> <p>4. <u>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u></p> <p>5. <u>현수막</u></p> <p>6. <u>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u></p> <p>7. <u>벽보</u></p> <p>8. <u>전단</u></p> <p>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p>	<p>(삭제)</p>	
--	-------------	--

<p>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p> <p>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등)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라 함은 도로·철도·공항·항만·케도·삭도·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p> <p>②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삭제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p>(삭제)</p>	
<p>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 	<p>제6조(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3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은 전산 및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 2. 광고물 설계도서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3. 광고물 디자인 안 4. 옥상 또는 지주광고물중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표시 	<p>제4조(허가의 절차 등) ①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p>②영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영 제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을 사용하는 광고물과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중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광고물 최대 길

<p>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p> <p>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p> <p>5.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자라 함은 소유자로 부터 토지나 물건 등의 관리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온라인 공인인증서 등에 의하여 승낙 받은 증명사항도 포함한다)</p> <p>6.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p>	<p>이가 2미터 이하이어야 한다)이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벽면에 돌출되게 표시한 광고물은 제외)</p> <p>2. 옥상광고물중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p> <p>3. 지주광고물중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이고 최대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p> <p>4. 교통광고물중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p> <p>5. 기타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애드벌룬</p> <p>6. 기타 시·군 또는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p>
<p>(신설)</p> <p>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하고,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p> <p>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허가권자가 제5조 허가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 표시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산 및 온라인으로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p>	<p>④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표시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디지털 안과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만을 첨부하고,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전자식발광·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p>

<p>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제3호의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업광고를 표시한 광고물과 제22조에 따른 안전도검사 제외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만료일 30일 이내에 제1항제5호의 서류(자기광고를 제외한다) 및 그 주변의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과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다.</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동항 제5호의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허가처리를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⑦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이전 등으로 허가받은 광고물을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물이 정비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⑧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6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표시기간이 90일 이내인 광고물을 제외한다.</p>	
<p>④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p>	<p>⑨광고물의 표시허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⑩그 밖에 광고물 표시에 관한 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표시방법</p> <p>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신설)</p>	<p>제7조(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p>	<p>제5조(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7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p>	<p>②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광고물 총 수량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시설물 또는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등이 당해 건물·시설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p>	<p>③광고물에 표시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p>	<p>4.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도의 시지역에서는 2개 이내,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지역에서는 3개 이내로 한다. 5.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창호광고물,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1업소 광고물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p>
<p>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삭제)</p>	
<p>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광고물은 보행·교통 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의 압력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로 또는 야광도로(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광고물에는 형광 및 야광도로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p>	
<p>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지면이나 건물, 공작물, 교통수단(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고정되지 않고 그 자체가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p>	
<p>(신설)</p>	<p>⑦광고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각각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p>	
<p>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p>		

<p>수 없다.</p> <p>⑩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⑧제1항 부터 제7항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제8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p>	<p>제6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건물벽면에 가로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p>①광고물은 건물 등의 창호이나 출입구를 막을 수 없고, 건물벽면의 가로폭과 높이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과 최상층의 벽면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안과 16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에는 4층이상 10층이하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2층 이상 정면과 최상층의 벽면에는 평면이 아닌 방법으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곡각부분에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p>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②건물벽면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1층에 현관 또는 층계나 승강기가 있는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 돌출폭은 20센티미터 이내의 평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광고물을 통합하여 나란히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광고물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3층 이상 벽면에는 가로의 길이는 3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최대 길이는 10미터 이내)로 건물명에 한해서 평면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p>제1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②건물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돌출되게 표시하는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10층 이하에만 표시하되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다.</p>	<p>③건물벽면에 돌출되게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물의 가로는 80센티미터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상업지역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광고물과 건물벽면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에 상하로 일직선상의 위치하도록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11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p>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p> <p>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p> <p>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p> <p>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p> <p>④건물벽면에 공연(공연중이나 다음공연내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물은 건물의 10층이하에 표시하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최대 길이는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p> <p>2. 광고물은 벽면에 밀착하여 표시하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p> <p>2.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p> <p>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p> <p>③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제9조에 따른 옥상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는 당해 건물벽면의 4층 이상 15층이하의 측면 또는 후면(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제외한다)중 하나의 벽면에 상업광고를 표시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제19조5항을 준용하며, 그 표시방법에</p> <p>⑤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물의 가로는 건물벽면 가로폭의 80퍼센트 이내(최대 길이는 15미터 이내), 세로는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p> <p>2. 광고물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광고물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이내)로</p>
--	---	---

<p>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p> <p>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p> <p>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p> <p>(신설)</p>	<p>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④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p> <p>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안에 벽면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해당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p>	<p>제9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옥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p> <p>1.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하 “자기건물”이라 한다)</p> <p>2. 종교시설에서 직접 사용중인 건물</p> <p>②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하고, 최저층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상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광역시5층, 시4층, 군3층]으로 한다.</p> <p>2. 광고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옥상광고물</p> <p>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다.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p>

<p>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센티미터 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p> <p>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p> <p>1.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p>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정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p> <p>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③광고물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최대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광고물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에 표시하는 경우</p> <p>3. 영 제9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평면이 아닌 방법이나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때에는 최고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p> <p>②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옥상광고물의 표시규격 산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광고물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p>나. 광고물의 높이는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광고물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옥상 난간의 높이 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p>
---	---	--

<p>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이로서 당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광고물(제8조제3항에 따른 벽면광고물도 포함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p>	<p>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표시하는 광고물은 광고물간에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광고물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광고물에 한한다)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이고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1면인 경우에 한한다)과 건물 옥상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p>	
<p>제5항의 3.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⑦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p>	
<p>제1항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p>	<p>⑧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p>	
<p>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p>	

<p>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p> <p>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p> <p>⑦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 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p>(신설)</p>	<p>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p> <p>(삭제)</p> <p>⑨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p>제10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광고물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 지면으로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하되, 지주광고물이 표시되는 동일한 지역 또는 장소에 있는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동일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하나의 지주에 광고물을 나란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나란히 표시하기</p>	<p>제8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p>

<p>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군·자치구 옥외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p>	
<p>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주의 끝부분(광고물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인 때에는 광고물의 끝부분을 말한다)은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유지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끝부분은 보도 또는 차도의 경계선 밖으로 돌출되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p>	<p>④광고물에 외부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의 전기나 조명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p>	
<p>②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①당해 건물부지 밖의 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p>		<p>1. 광고물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광고물이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2.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p>
<p>3.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p>		<p>②공연내용을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만 표시하여야 하며,</p> <p>2. 광고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되,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p> <p>4.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6.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7.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삭제)</p>	<p>③아취 또는 탑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기동길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아취 모양은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p>③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9조(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동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p>어야 한다.</p> <p>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5.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6.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신설)</p> <p>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계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p>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③ 삭제 (신설)</p>	<p>⑤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1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벽보게시판 및 현수막계시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p>② 공공광고물은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물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p>3.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p>	<p>제9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지통 2. 벤치 <p>② 공공시설물 또는 편익시설물의 외부에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의 전기나 조명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p>
--	---	---

<p>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p>⑤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광역단위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삭제 <p>③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p>	<p>정한다.</p> <p>제12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제4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외부에 표시하는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2.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p>②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창호 부분을 제외한 교통수단 외부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되,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제14조에 따른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이 교통수단에 밀착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 각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화물자동차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p>제10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이용상 불편하도록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2. 시설내부 벽면이나 시설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반드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p>②시·도지사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	---	--

<p>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p>(신설)</p>	<p>③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3조(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 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3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 		<p>제11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제2조제1호에 따른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애드벌룬을 매달은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3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하거나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

<p>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p> <p>6. 삭제 (신설)</p> <p>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다.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p> <p>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삭제)</p>	<p>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p> <p>6. 애드벌룬은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워야 하며,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4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	-------------	--

<p>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삭제)</p>	<p>제12조(창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3층 이하 창호나 유리면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안쪽에서 창호나 유리면에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호나 유리면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창호나 유리면의 내·외부에는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각종 표시물이나 네온·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p>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제2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내용은 자기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2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3.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교통 및 보행에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 및 지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명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p>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	-------------	---

		<p>예식·웨딩홀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p> <p>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은 건물의 2층 이상 10층 이하의 창호나 환기구가 없는 벽면에만 표시하되, 가로길이는 당해 건물폭의 5분의1이내, 세로길이는 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20센치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은 건물의 폭과 상단을 초과할 수 없고,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p>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p> <p>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④연립형 지주(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2. 지주는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업소 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p> <p>3.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p> <p>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p> <p>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p> <p>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p> <p>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p>
--	--	---

<p>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p>제14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①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p>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건물</p> <p>⑤단일형 지주(하나의 지주에 현수기를 매달아 표시하는 형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의 두께는 지름 10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5미터 이내로 하되 현수기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그 하단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주는 최대 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주간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지주에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하나의 지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하며, 2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현수기의 하단은 플라스틱·스텐레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된다. <p>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의한다. <p>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p>제16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p>
---	---	---

<p>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p> <p>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삭제</p> <p>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p> <p>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결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p> <p>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삭제</p> <p>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삭제</p> <p>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p>	<p>3.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안전하게 피복처리하여야 한다.</p> <p>4.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은 광원에 커버를 씌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 등과 따로 설치하여 간접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건물부지내 지주광고물을 점멸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을 제외한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p> <p>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외 관광지</p> <p>5.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광원 밝기와 색깔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②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단순한 문자나 도형 등의 화면변환 방식 또는 점멸방식을 제외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p> <p>1.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p>	
--	--	--

<p>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p>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u>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u></p> <p>2. 제1호에 따른 표출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p>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③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과 제1항에 따른 전기 또는 조명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④그 밖의 전기 또는 조명의 추가적인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①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 및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전기 또는 조명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자치구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광원 밝기와 빛의 색깔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각적인 충격이나 자극 또는 장애 등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p>④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p>제17조(광고물 실명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	--	--

<p>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제15조(광고물 총량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규모에 따른 건물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p>	<p>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 광고물 나.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아취 및 탑 모양의 광고물, 제12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실명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스티커 모양의 인식표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5. 제2호 전단에 따른 스티커 모양의 인식표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명표시 인식표는 허가증 및 변경 허가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광고물 실명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독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그 내용은 30일 이내에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8조(광고물 총량제) ①영 제15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p> <p>(신설)</p>	<p>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p> <p>제16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범위)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p>	<p>1. 건물정면 입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는 건물 정면 입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외 관광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자치구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신청은 당해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전에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광고물표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 받을 수 있다.</p>

<p>(신설)</p>	<p>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300미터 이상의 도로변 구간 2. 20개 이상의 건물 또는 50개 이상의 업소가 도로변에 접하여 길게 이어져 있거나 불력을 형성하여 모여있는 지역 <p>제17조(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간 또는 블록 단위로 명확하게 선정할 것 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내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2분의1 이상으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것 <p>②특별자치도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와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 단체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에서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와 “주민협의회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관리지역내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p>④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자율관리지역의 유지</p>	<p>제19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취소 및 변경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7인 이상의 사업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당해 지역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제1호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후 주민협의회 구성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지정 신청서와 주민협의회 구성현황을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서를 교부하고, 자율관리지역의 명칭·관리자·운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하되, 이 기간까지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주민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 단체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p> <p>④주민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와 “주민협의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의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p>
-------------	--	---

	<p>및 관리는 지역 주민의 자율참여방식으로 하되, 그 운영기간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최소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p> <p>⑤그 밖에 자율관리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위원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자율관리지역내에서의 광고물 설치기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⑥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7일전까지 공청회 내용과 장소·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였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율관리지역내 20인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자율관리지역내 건물 소유권자 3. 자율관리지역내 토지 소유권자 4. 당해 지역내 옥외광고 관련단체 임원 5.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p>②주민협의회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신청 2.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단체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 체결 3.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당해 사업지역내 주민의 4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 작성 및 의결 4. 개선된 광고물과 가로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5.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주민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심의의결 <p>③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20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협의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 감사 1인 등 총 5명의 운영진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간사는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②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자율관리지역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제외한다.</p>
(신설)	<p>제19조(세금감면)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면해 줄</p>	<p>제21조(세금감면 신청 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 내의</p>

<p>(신설)</p>	<p>수 있는 세금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자 : 「지방세법」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또는 사업자 소득세의 30퍼센트 범위</p> <p>2. 자율관리지역내에서 지정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부과되는 광고물 표시 부담금 전액</p> <p>②제1항에 따른 세제감면의 세부적인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건물·토지내의 광고물 개선을 완료한 시점의 당해연도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 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따른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광고물 개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세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p>
	<p>제20조(예산지원) ①자율관리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율관리지역 및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와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서 주민협의회와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④그 밖의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21조(허가 업무의 위탁) ①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허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벽면광고물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금지 및 제한</p> <p>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타광고물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3. 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지정계 시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 2.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업무를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업무를 위탁 절차를 준용한다.</p> <p>제22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장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공서·공공기관·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2.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p>제22조(표시금지 지역 등)</p>
---	--	-------------------------------

<p>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p> <p>(신설)</p>	<p>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다.</p> <p>4. <u>도로교통의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지역·장소</u></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p> <p>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이하 "자사광고"라 한다)</p> <p>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p> <p>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3의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p> <p>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p> <p>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 (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p> <p>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p> <p>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p> <p>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p>	<p>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p>	
<p>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p> <p>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제1항의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p> <p>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p>	<p>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p> <p>2.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횡단보</p>	

<p>책</p> <p>1의2. 전주</p> <p>1의3.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가로수</p> <p>3. 동상 및 기념비</p> <p>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p> <p>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p> <p>6. 전망대 및 전망탑</p> <p>7. 담장</p> <p>8. 재배중인 농작물</p> <p>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p>	<p>도안전표시등 및 보도책</p> <p>3. 전주</p> <p>4. 가로수</p> <p>5. 동상 및 기념비</p> <p>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p> <p>7. 우편함·소화전·지상변압기함 및 화재경보기</p> <p>8. 전망대 및 전망탑</p> <p>9. 건물 등의 기둥·담장·울타리(가설울타리를 포함한다)</p> <p>10. 재배중인 농작물</p> <p>1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집합건물 등의 공기조절장치</p> <p>12. 도로교통의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p>	<p>①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장소는 다음과 같다.</p> <p>1. 비행장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p> <p>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p> <p>②영 제2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로등 자동점멸기함</p> <p>2. 교통안전시설물</p> <p>3. 공중전화 부스</p> <p>4.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p> <p>5. 도로(인도 포함)의 노면</p>
<p>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p> <p>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p>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업활동의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등에는 당해 관할 지역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1.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 할 수 있는 지역</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p>	

<p>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④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p>	<p>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p> <p>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외 관광지</p> <p>2.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지구</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시설보호지구·경관지구 및 보존지구</p> <p>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p> <p>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p> <p>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중 공원 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p> <p>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p> <p>바. 그 밖에 제1호 각목 외의 지역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지역</p>	
---	--	--

<p>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안전도검사</p> <p>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5의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5의3.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p>제39조(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등에 광고내용을 직접 표현한 광고물 2. 광고내용을 표시한 비닐·천·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건물 등에 밀착하여 직접 부착하거나 배부 또는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3.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p>제24조(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표준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표준 설명서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벽면광고물 2. 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미만인 지주광고물 <p>제24조(안전점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필증 또는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	--	--

<p>경우에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같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p>경우에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였을 때.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같음한다. 2.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3.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p>
<p>③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제1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호 각목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의 신청 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했거나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위치를 변경한 때 : 표시 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나.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2. 안전점검 신청시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광고물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다만, 허가 신청시에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다. 광고물 표시 허가증 사본 	
<p>(신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허가권자는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안전점검표를 첨부하여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⑥허가권자는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p>	<p>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p>	<p>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2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p>

<p>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p>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이하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p>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위탁기간·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임무 등을 포함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p> <p>(시설)</p>	<p>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각 1인 이상.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각종 실측·점검장비 및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p>③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26조(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외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p> <p>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p>	<p>제3장 옥외광고업 관리</p> <p>제26조(등록의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자격과 시설기준은 별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시설기준을 따로 	<p>제2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 종사자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업일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확인한</p>

<p>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2. 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p>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p>
<p>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p>	<p>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신규등록에 한한다)</p> <p>2.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개인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가 제26조제1호 별표3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p> <p>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p> <p>4. 종업원 현황 및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p> <p>5. 옥외광고업 등록증(변경등록에 한한다)</p>	<p>③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제26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허가한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1. 영 제27조제2항의 다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p>
<p>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p> <p>3.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 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장부(별지 제7호서식)</p>
<p>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⑤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재개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p>	
<p>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p>		

<p>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p> <p>⑨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⑩제4항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휴업·폐업 신고시 : 옥외광고업 등록증 2. 재개업 신청시 :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p> <p>⑥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재개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⑦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8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종사자 또는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p>
<p>제41조의2(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p>제28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정관)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 단체 및 연합회(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p>②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9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2. 옥외광고업자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 	<p>제28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종사자 또는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p>

<p>(신설) (신설) (신설)</p> <p>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규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 4. 관계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p>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내용·시간·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p>③시·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시·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⑥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훈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p>제4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p>	<p>제30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 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29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실시코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30조(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p> <p>제35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말한다.</p> <p>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옥외광고 진흥</p> <p>제31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p>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여야 한다.</p> <p>②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실시 후 그 교육 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교육실시와 관련된 기타사항은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p>
---	---	---

<p>행한다.</p> <p>④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p> <p>⑥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p> <p>⑧정책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⑨제1항부터 제8항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①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자율관리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p>②시·군 또는 자치구(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 2. 시·군·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p>①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 		

<p>를 거쳐야 하는 사항</p> <p>2. 시·군·구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p> <p>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p> <p>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시·군·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⑧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시·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p>	<p>·군·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p> <p>제33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디자인·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언어·디자인·색채 등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4.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언론매체 대표 5.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시·도 위원회에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시·도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시·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31조(옥외광고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	---

<p>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신설)</p>	<p>⑨시·도 위원회는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2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⑪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시·도"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p> <p>(신설)</p>	<p>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는 시·군·구로, "시·도 조례"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⑩시·군·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p>	<p>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자율관리지역 주민협의회 임원 2. 당해 자율관리지역이 속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 3. 그 밖에 광고물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p>⑫그 밖에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제33조(심의안건 제출방법 등) 영 제33조제11호에 따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6조 (수당과 여비) 시·군·구 위원회, 시·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장의2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p> <p>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제곱미터 이상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 	<p>(삭제)</p>	

<p>하는 안내표지판</p> <p>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p>③국가등은 제2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 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0.7미터,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 가로등주에 0.1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에서 현수기의 밀부분까지는 18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6. 현수기의 밀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p>⑤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광고물등의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①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별표 6과 같다.</p>	<p>제35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①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4와 같다.</p> <p>②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p>	
--	--	--

<p>②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p>	<p>시·군·자치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사용한다.</p>
<p>③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p>	<p>③센터는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p>
<p>④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④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p>
<p>제37조의3(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부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p>	<p>제36조(기금조성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7조 부터 제14조에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p>
<p>②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p>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를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센터는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전에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④센터는 제3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의 규격·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에 갈음한다.</p>
<p>⑤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p>	

다.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5장 부담금

제37조(부담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신청한 때
2.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규격이나 사용자재를 변경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한 때
3.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

제34조(옥외광고 기금 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2. 안전점검의 기준 및 광고물에 대한 표준 설계도와 시방서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3.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
4. 자율관리지역내 주민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5. 옥외광고 관련단체 및 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
6.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 또는 학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활동 및 조사·연구비 등 지원
7. 시·군 또는 자치구 광고물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고물 및 가로경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그 밖에 옥외광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수수료) ①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6,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한 날
2.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한 날
3.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안전점검을 받아 합격판정을 받거나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날

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부담금의 납부기간) ①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인 광고물 표시를 허가받은 자(허가사항 변경 및 표시기간

	<p>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부담금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계 법령 3. 부담금 산출근거 및 납부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5. 그 밖에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p> <p>제38조(부담금의 감면) ①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광고물을 1개만 설치한 경우 2. 자율관리지역에서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3. 기타광고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p>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39조(부담금의 부과실적 등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매월 그 부과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부담금의 부과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과실적 등을 매년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금의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p> <p>③허가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1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취소한다.</p> <p>제38조(부담금의 감면) ①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타광고물은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광고물을 말한다.</p> <p>②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 9와 같다.</p>
(신설)	<p>제43조의2 (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신설)	<p>제6장 행정처분</p> <p>제40조(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①법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1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처분권자는 법 제22조</p>	

<p>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 조직 등을 통하여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및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2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① 처분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p>	<p>제4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전점검을 신청 한 자 : 100만원 이하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기타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 300만원 이하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00만원 이하 4.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 : 500만원 이하 5.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 6.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장 밖에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p>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p> <p>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p>	<p>7.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p> <p>8. 법 제13조에 따른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100만원 이하</p> <p>②처분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과태료 금액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처분권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 4.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p> <p>⑤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한 광고주,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및 옥외광고업자(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거과정에서 훼손되어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p>
---	---

<p>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p>	<p>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시·군·자치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과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보관한 때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구보에 그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p>	
<p>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을 광고물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광고물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40조의4(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당해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p>	<p>⑦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을 반환받을 광고물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은 당해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p>	
<p>제8장 벌칙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p>	<p>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p>

<p>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 및 지주광고물 : 300만원 이하 2. 옥상광고물 및 공공광고물 : 500만원 이하 3. 교통광고물(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및 기타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 <p>②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이행강제금 금액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p> <p>⑤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	--

VI. 개편법률(안)

1. 옥외광고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표시·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모든 종류의 매체를 말한다. 다만, 건물 등에 조명만을 사용하여 광고내용을 표출하지 않거나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매체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2. "게시시설"이란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을 직접 제작·표시·임대하거나 또는 그 표시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성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옥외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광고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등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옥외광고물 관리

제4조(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①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광고물의 실명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통수단이 2 이상의 시·도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허가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허가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고물의 수량과 표시규격 등 광고물 표시기준을 주민자율로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지정 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세금감면 및 예산지원)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또는 사업자소득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관리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광고물 디자인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 ①누구든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광고물과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1. 표시할 수 없는 광고물

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색깔 또는 형태의 광고물

나.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다. 파손되었거나 붕괴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

라. 오염되었거나 변색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2.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

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아름답고 좋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생활습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보호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라.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마.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8조(적용제외 및 특례) ①비영리 목적으로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2.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축제 또는 행사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물

5. 국가등에서 축제 등 각종 행사와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②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국가등에서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광고물의 표시관련 특례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 표시위치 및 광고물의 종류·수량·규격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광고물의 표시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

3. 국가등에서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안내 등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제9조(안전점검) ①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④제2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옥외광고업 관리

제1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과 시설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을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업무를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개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로 영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산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그 영업소 안에 광고물의 제작·설치 등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장 밖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설립) ①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령 등에 관한 교육 등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필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각 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옥외광고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 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및 디자인, 설계·시공, 안전점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옥외광고 진흥

제1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 ① 광고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옥외광고센터에서 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광고물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옥외광고위원회) ①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광고물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광고물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 관련 사항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⑨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①국가등은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제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금지·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고물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을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위치·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광고물 표시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배분비율·용도 및 그 밖의 수익금의 배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옥외광고 기금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광고물 관리업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도 옥외광고 기금(이하 “시·도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도 기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로 배분되는 수익금
- 나.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 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라. 국가로 부터의 보조금

2. 시·도 기금은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로경관의 개선·법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 및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군·자치구 옥외광고 기금(이하 “시·군·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 나.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 다.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 라. 제2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 마.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 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사.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의 보조금
2.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은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로경관의 개선·법령 등에 관한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수수료 및 부담금

제19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 등록 신청시에 각각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4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허가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안전점검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제20조(광고물 표시 부담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부과대상·부과기준·부과금액·부과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도시미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등이 광고물을 표시한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이 표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30을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체인 시·도에 배분한다.

⑦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행정처분

제21조(허가의 취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
3. 제7조 따른 광고물의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5.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제22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표시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제23조(청문)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광고물 표시에 대한 허가 소
2.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전점검을 신청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
5. 제10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

7.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이하 “처분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처분당사자는 처분권자로부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처분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처분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 통보를 받은 법원은 즉시 감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처분권자는 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처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⑪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그 광고물의 표시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관리자·대리인(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의 제거·보완·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2.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

3.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허가사항 이외의 싸인볼·조명튜브·통신안테나·간접조명기구 등을 부착하였거나 안전사고와 화재위험 등이 우려되는 광고물

4. 제5조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

5.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

6.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

7.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받은 광고물

②처분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광고물관리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고한 후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붕괴·추락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중 광고물관리자의 전화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⑦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⑧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과 제2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광고물의 광고물관리자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 제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처분권자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관리자(제26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받는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은 1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하 “처분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

고지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행강제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등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 다만,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
2.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옥상)과 기둥, 벽이 있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차고와 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벽면”이란 건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3. “정면”이란 도로폭이 3미터 이상인 보행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막다른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고 개별 업소 또는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
4. “광고내용”이란 성명·상호·상표·상품 및 영업내용(이미지·그림 및 사진을 포함한다)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표시”란 옥외광고물 또는 그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광고내용을 직접 부착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기광고”란 광고내용 중 자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업광고”란 자기광고 이외의 모든 광고를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벽면광고물 :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2. 옥상광고물 :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과 승강기 탑 등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3. 지주광고물 : 지면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4. 공공광고물 :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5. 교통광고물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6. 기타광고물 :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옥외광고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제4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 가. 지하도
 - 나. 철도
 - 다. 지하철
 - 라. 공항
 - 마. 항만
 -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마. 「항공법」 제2조제1호·제25호·제25의3호에 따른 비행기, 초경량비행장치, 모의비행장치

제2장 옥외광고물 관리

제5조(허가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의 표시가 법 제7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7조부터 제15조에 적합할 것
3.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기타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3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은 전산 및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
2. 광고물 설계도서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3. 광고물 디자인 안
4. 옥상 또는 지주광고물중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5.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자라 함은 소유자로 부터 토지나 물건 등의 관리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온라인 공인인증서 등에 의하여 승낙받은 증명사항도 포함한다)
6.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제5조 허가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 표시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전산 및 온라인으로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제3호의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업광고를 표시한 광고물과 제22조에 따른 안전도검사 제외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만료일 30일 이내에 제1항제5호의 서류(자기광고를 제외한다) 및 그 주변의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이전 등으로 허가받은 광고물을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물이 정비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6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표시기간이 90일 이내인 광고물을 제외한다.

⑨광고물의 표시허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그 밖에 광고물 표시에 관한 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②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광고물 총 수량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광고물에 표시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④광고물은 보행·교통 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의 압력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광고물에는 형광 및 야광도로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⑥지면이나 건물, 공작물, 교통수단(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고정되지 않고 그 자체가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⑦광고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각각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제1항 부터 제7항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8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은 건물 등의 창호이나 출입구를 막을 수 없고, 건물벽면의 가로폭과 높이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②건물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돌출되게 표시하는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10층 이하에만 표시하되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다.

③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제9조에 따른 옥상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는 당해 건물벽면의 4층 이상 15층이하의 측면 또는 후면(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제외한다)중 하나의 벽면에 상업광고를 표시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제19조5항을 준용하며,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④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9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옥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1.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하 “자기건물”이라 한다)

2. 종교시설에서 직접 사용중인 건물

②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하고, 최저층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광고물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최대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광고물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광고물(제8조제3항에 따른 벽면광고물도 포함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광고물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광고물에 한한다)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이고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1면인 경우에 한한다)과 건물옥상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⑦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⑧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⑨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 지면으로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하되, 지주광고물이 표시되는 동일한 지역 또는 장소에 있는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동일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하나의 지주에 광고물을 나란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나란히 표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③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주의 끝부분(광고물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인 때에는 광고물의 끝부분을 말한다)은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유지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끝부분은 보도 또는 차도의 경계선 밖으로 돌출되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벽보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②공공광고물은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물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3.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2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제4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외부에 표시하는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2.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②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창호 부분을 제외한 교통수단 외부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되,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제14조에 따른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이 교통수단에 밀착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화물자동차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③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3조(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 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4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①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안전하게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4.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은 광원에 커버를 씌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 등과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건물부지내 지주광고물을 점멸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을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
5.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광원 밝기와 색깔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단순한 문자나 도형 등의 화면변환 방식 또는 점멸방식을 제외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출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과 제1항에 따른 전기 또는 조명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전기 또는 조명의 추가적인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광고물 총량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규모에 따른 건물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

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16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범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300미터 이상의 도로변 구간
2. 20개 이상의 건물 또는 50개 이상의 업소가 도로변에 접하여 길게 이어져 있거나 불력을 형성하여 모여있는 지역

제17조(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간 또는 블록 단위로 명확하게 선정할 것
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내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2분의1 이상으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것

②특별자치도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와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 단체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에서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와 “주민협의회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관리지역내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자율관리지역의 유지 및 관리는 지역 주민의 자율참여방식으로 하되, 그 운영기간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최소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자율관리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협의회 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율관리지역내 20인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자율관리지역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자율관리지역내 건물 소유권자
3. 자율관리지역내 토지 소유권자
4. 당해 지역내 옥외광고 관련단체 임원
5.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②주민협의회 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신청
2.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단체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 체결
3.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당해 사업지역내 주민의 4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 작성 및 의결
4. 개선된 광고물과 가로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5.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주민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심의의결

③그 밖의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세금감면)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세금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자 : 「지방세법」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또는 사업자 소득세의 30퍼센트 범위
2. 자율관리지역내에서 지정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부과되는

광고물 표시 부담금 전액

②제1항에 따른 세제감면의 세부적인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예산지원) ①자율관리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율관리지역 및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와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서 주민협의회와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허가 업무의 위탁) ①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허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광고물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2. 기타광고물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3. 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지정계시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
2.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서·공공기관·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2.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

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다.

4. 도로교통의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지역·장소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2.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등 및 보도책
3. 전주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7. 우편함·소화전·지상변압기함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건물 등의 기둥·담장·울타리(가설울타리를 포함한다)
10. 재배중인 농작물
1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집합건물 등의 공기조절장치
12. 도로교통의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업활동의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등에는 당해 관할 지역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 할 수 있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외 관광지
2.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지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시설보호지구·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중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

경지구

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바. 그 밖에 제1호 각목 외의 지역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도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등에 광고내용을 직접 표현한 광고물
2. 광고내용을 표시한 비닐·천·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건물 등에 밀착하여 직접 부착하거나 배부 또는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3.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제24조(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표준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표준 설명서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였을 때.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같음한다.
2.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3.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제1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호 각목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신청 시기
가.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했거나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위치를 변경한 때 : 표시 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나.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2. 안전점검 신청시 구비서류
가. 광고물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다만, 허가신청시에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다. 광고물 표시 허가증 사본

⑤허가권자는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안전점검표를 첨부하여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허가권자는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이하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각 1인 이상.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각종 실측·점검장비 및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③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3장 옥외광고업 관리

제26조(등록의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자격과 시설기준은 별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신규등록에 한한다)
2.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개인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가 제26조제1호 별표3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종업원 현황 및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옥외광고업 등록증(변경등록에 한한다)

②제26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허가한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재개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신고시 : 옥외광고업 등록증
2. 재개업 신청시 :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⑥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재개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정관)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 단체 및 연합회(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2. 옥외광고업자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신규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
4. 관계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내용·시간·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 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장 옥외광고 진흥

제31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반수미만이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⑧정책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제1항부터 제8항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①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자율관리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시·군 또는 자치구(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조정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
2. 시·군·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

제33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디자인·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언어·디자인·색채 등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4.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언론매체 대표
5.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시·도 위원회에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시·도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시·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⑨시·도 위원회는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는 시·군·구로, “시·도 조례”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본다.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1. 당해 자율관리지역 주민협의회 임원
2. 당해 자율관리지역이 속하는 동의 주민자치 위원
3. 그 밖에 광고물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⑫그 밖에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①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군·자치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센터는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6조(기금조성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7조 부터 제14조에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는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전에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의 규격·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에 갈음한다.

제5장 부담금

제37조(부담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신청한 때
2.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규격이나 사용자재를 변경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한 때
3.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부담금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계 법령
3. 부담금 산출근거 및 납부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5. 그 밖에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감면) ①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기광고물을 1개만 설치한 경우
2. 자율관리지역에서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3. 기타광고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39조(부담금의 부과실적 등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매월 그 부과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부담금의 부과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과실적 등을 매년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금의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처분

제40조(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①법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처분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 조직 등을 통하여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및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①처분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전점검을 신청한 자 : 100만원 이하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기타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 300만원 이하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00만원 이하

4.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 : 500만원 이하
5.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
6.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장 밖에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
8. 법 제13조에 따른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100만원 이하

②처분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과태료 금액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처분권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
4.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⑤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및 옥외광고업자(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거과정에서 훼손되어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과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보관한 때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구보에 그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을 광고물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광고물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을 반환받을 광고물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은 당해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1. 벽면광고물 및 지주광고물 : 300만원 이하
2. 옥상광고물 및 공공광고물 : 500만원 이하
3. 교통광고물(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및 기타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

②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이행강제금 금액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5.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2.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
 -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 ⑤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광고물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허가기간
1. 벽면광고물	3년 이내
2. 옥상광고물	3년 이내
3. 지주광고물	3년 이내
4. 공공광고물	3년 이내
5. 교통광고물	
가. 교통시설	3년 이내
나. 교통수단	3년 이내. 단, 비행선은 30일 이내
5. 기타광고물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허가기간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별표 2】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

1. 벽면광고물의 안전점검 표

	점 검 사 항	점검자 판정
1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에 의해 제시된 설계도서의 비교검토	적격() 미흡() 부적격()
2	제시된 광고물에 대한 풍압력 검토 (구조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3	제시된 광고물에 대한 앵커볼트의 인장력 검토 (구조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4	적정용량 전선의 사용여부 검토 (용량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5	광고물의 긴결상태 점검 (볼트접합/용접접합/기타접합)	적격() 미흡() 부적격()
6	광고물의 마모, 흔들림, 비산(飛散) 가능성의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7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8	제시된 설계도서와 사용전선의 일치 여부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 ※ 1~4항은 설계도서의 검토 / 5~8항은 현장 점검
- ※ 미흡 3항 이상이면 불합격으로 판정 / 부적격 1항 이상이면 불합격으로 판정
- ※ 비산 (飛散) : 날아서 흩어짐.

2. 지주 및 옥상광고물의 안전점검 표

	점 검 사 항	점검자 판정
1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에 의해 제시된 설계도서의 비교검토	적격() 미흡() 부적격()
2	제시된 광고물에 대한 풍압력 검토 (구조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3	제시된 광고물에 대한 앵커볼트의 인장력 검토 (구조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4	적정용량 전선의 사용여부 검토 (용량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5	광고물과 기초와의 긴결여부 검토 (접합볼트·지지력계산)	적격() 미흡() 부적격()
6	광고물의 마모, 흔들림, 비산(飛散) 가능성의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7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8	제시된 설계도서와 사용전선의 일치 여부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9	광고물과 기초부분의 긴결상태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10	광고물의 도장상태 및 보행자 위해요 인 점검	적격() 미흡() 부적격()

- ※ 1~5항은 설계도서의 검토 / 6~10항은 현장 점검
- ※ 미흡 3항 이상이면 불합격으로 판정 / 부적격 1항 이상이면 불합격으로 판정
- ※ 비산(飛散) : 날아서 흩어짐.

3. 안전점검 기준(별도책자로 작성해야 함)

【별표 3】

옥외광고업의 종별 영업범위 및 기술자격 등

종별	영업범위	기술자격	시설요건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액 1,000만원 이상의 제작 및 설치공사 • 옥외광고 매체대행 • 광고물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철물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도 포함), 건축, 전기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 99.9제곱미터 이상 (공장등록필)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7인 이상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액 1,000만원 미만의 제작 및 설치공사 • 옥외광고 매체대행 • 광고물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도 포함) 또는 건축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 33.3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3인 이상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 매체대행 • 광고물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증(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도 포함) 소지자 각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1인 이상

※ 비고 : 도금액의 범위는 철구조물로 제작·설치한 광고물에 한해서 적용한다.

【별표 4】

주요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 등

1.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방법
 -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100분의 5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는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 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00분의 20을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 다. 나머지 100분의 30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물을 설치한 시·군·구 및 광고물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시·군·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각종 사업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시·군·구 및 그 밖의 시·군·구의 광고물의 표시 또는 정비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 라. 가목·나목의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 근거법률의 효력기간으로 한다.
 - 마. 배분시기 및 배분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배분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5】

기금 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방법 등

종 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1. 지주 광고물	<p>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8미터, 세로 8미터(총 광고면적은 288제곱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p> <p>2. 광고물의 상단까지 높이는 게시시설을 합산하여 도로면 수평높이에서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p> <p>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평면형 : 광고판의 한면 이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입체형 :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실물모양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다. 복합형 :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p> <p>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점</p>	<p>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 선로변의 양측 갓길로부터 30미터 밖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되,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로·제방·하천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등의 운전시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한다.</p> <p>2. 광고물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 기준 500미터 이상으로 한다.</p> <p>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홍수시 유수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 수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검을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제시시설은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p>	<p>나. 제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p>
2. 홍보탑	<p>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총 광고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광고물 상단까지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p> <p>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내에 한하여 광고물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광고물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인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p> <p>3.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호 지주광고물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준용한다.</p>	<p>1. 공항·철도역사·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출입로는 제외한다)부지내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2.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적색·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우려가 있는 색상을 사용하지는 아니된다.</p> <p>4. 광고물 간 이격거리는 두지 아니하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3. 옥상 광고물	1. 표시규격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1.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층수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광고물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기준 20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호에 따른 광고물간의 이격거리 적용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3. 옥상광고물은 고속도로변 지주광고물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 비 고

1. 전기는 고속국도 휴게소 내 설치 전광류 광고를 제외하고는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 가.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구간)에 대하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산지지역의 경우 입체형 광고물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설치지점으로 부터 산정한다.

【별표 6】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부 담 금
1. 벽면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이상 1.5만원이하 · 1.1만원이상 1.6만원에 연면적 2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천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 2만원이상 2.5만원에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 5만원이상 5.5만원에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2. 공공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이상 1.5만원이하 · 1.5만원이상 2만원에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3. 교통광고물 가. 교통시설 나. 교통수단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이상 1.5만원이하 · 1.5만원이상 2만원에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① 비행선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 10만원
② 비행기 • 선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 • 1.5만원에
③ 자동차	대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기타광고물 • 현수막, 전단, 벽보 제외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에 부 과되는 부담금을 준용한다.	

※ 부담금의 산정방법

- (1) 연면적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전부 합한 면적을 말한다.
- (2) 부담금 산정은 광고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연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
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벽면광고물중 벽면에 돌출되게(광고물의 최대외각선이 벽면으로부터 30미
터를 초과한 경우) 표시한 벽면광고물에 대하여는 해당 부담금과 해당 부
담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에 커버를 씌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광고물은 해당 부담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적용하고, 광원을
게시시설 등과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광고물은 해당
부담금과 해당 부담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조치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다.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완화를 위반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 광고물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마.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 물 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바. 옥외광고업 기술자격 및 시 설기준을 위반한 조치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 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미만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 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 적용상의 유의사항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옥외광고물 표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철거·멸실]	허가 신청(신고)서	처 리 기 간 신청 : 7일 신고 : 3일(즉시)
---	-------------------	--

공 통 기 재 부 분		허가번호 : □□□□-□□□□□□□□-□□-□-□□□□□□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옥외광고물 종 류		사용조명	
표시·설치 규격(m)		가로 × 세로 (높이:)	수 량 개
표 시·설 치 장 소		부 착 위 치 층 면	
광 고 내 용		최 초 설 치 일 년 월 일	
표 시 기 간(당초)		부 터 까지 ※연장	부 터 까지
광 고 물 관 리 자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기 타 (공작물의 설치 허가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여부 기재)			

변경사항 등 기재부분			
변경구분	<input type="checkbox"/> 광고물관리자 <input type="checkbox"/> 광고내용 <input type="checkbox"/> 규 격 <input type="checkbox"/> 구조 및 조명방식 <input type="checkbox"/> 위치 및 장소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공업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	등록번호	

철거·멸실사항 기재부분			
철거·멸실일자	년 월 일	철거·멸실사유	

「옥외광고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허가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뒷면내용 참조	수 수 료 시·도 조례참조
------------------	-------------------

※ 비 고 : 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1. “광고주”란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내용의 표시를 의뢰한 당해 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광고물관리자”란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소유권한을 갖고 있는 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시공업자”란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써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신청(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와 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규 허가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 1부. ② 광고물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각 1부. ③ 광고물 디자인 안 1부. ④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나. 변경 허가 신청(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가”의 구비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②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반납 다. 연장 허가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광고물과 그 주변의 현장사진 1부. ②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반납 라.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반납 ※ 이 신청(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시·도 또는 시·군·구	협 의 기 관 관 계 부 서
신청(신고)	접 수 검 토 결 재	협 의
허가증 교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광 고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주 소			
옥외광고물의 종류		사용조명		
규 격 (m)				수 량
광 고 내 용				
표시·설치장소		부착위치		
표 시 기 간		부터 까지		
광 고 물 관 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주 소		
시공업소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업 소 명	영업장소재지		
기 타		변경 허가일, 허가증 재교부일 및 변경사항 등 기재		
<p>상기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허가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분실 (), 훼손()		
<p>「옥외광고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허가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시·도 조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뒷 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장	안전점검 신청서	처 리 기 간 15 일
---	----------	-----------------

공통 기재부분		허가번호 : □□□□-□□□□□□□□-□□-□-□□□□□□	
광고주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 화 번 호	
	주소	사용조명	
옥외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표시·설치 규격(m)		가로 × 세로 (높이 :)	수 량
표시·설치 장소		부착위치	층 면
광고 내용		최초설치일	년 월 일
표시 기간(당초)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광고물 관리자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 화 번 호	
	주소	기 타	

시공업소 기재부분			
시공업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	등록번호	

「옥외광고법」 제9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뒷면내용 참조	수 수 료 시·도 조례 참조
------------------	--------------------

- ※ 비 고 : 안전점검 신청서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1. “광고주”란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내용의 표시를 의뢰한 당해 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광고물관리자”란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소유권한을 갖고 있는 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시공업자”란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써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옥외광고물을 최초로 설치한 날(최초로 허가받은 날을 말함)과 당초의 허가받은 표시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표시기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안전점검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와 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광고물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각 1부. (단, 허가 신청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 나.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각 1부.
 - 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사본 1부.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또는 시·군·구 및 안전도검사업체	
검사필증 교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접 수
		<input type="checkbox"/> 안전점검
		<input type="checkbox"/>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필증				
광 고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주 소			
허 가 번 호		최초설치일		
표 시 기 간		부터 까지		
옥외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표시·설치 규격(m)		가로 × 세로 (높이 :)	수 량	
표시·설치 장소		부착위치	층 면	
광 고 내 용				
광 고 물 관 리 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시공업소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업 소 명		영업장소제지	
검 사 자	성 명		검 사 일 자	
	소 속		영업장소제지	
<p>상기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업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폐업·휴업 <input type="checkbox"/>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서				처 리 기 간 신청 : 7일 신고 : 3일(즉시)
공통기재 부분		등록번호 : □□□□-□□□□□□□□-□□-□-□□□□□□		
신 청 인	대 표 자		주 민(법인)등 록 번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업장소제지				
영 업 내 용				
사무실 면적		㎡	작 업 장 면 적	㎡
종 업 원 수	명	자 격 취 득 자 수		
		및 자 격 종 류		
변경사항 기재부분				
변 경 구 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업소(법인)명 <input type="checkbox"/> 영업장소제지 및 주소 <input type="checkbox"/> 기술자격 <input type="checkbox"/> 영업내용		
변경, 휴·폐업 및 재개업 일자		년 월 일	휴·폐업사유	
휴 업 기 간		년 월 일	일부	년 월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규 등록 및 재개업시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p>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기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옥외광고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3항 까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신청(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 뒷면내용 참조				수 수 료
				시·도 조례 참조

(뒷면)

※ 비 고 : 등록 신청(신고)서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1. “신청인”란은 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종업원 수”란은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자격취득자 수 및 자격종류”란은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총 인원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증 명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가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6조제1호 별표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등록 및 재개업 신청(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와 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옥외광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신규 등록에 한함)
 - 나.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부.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함)
 - 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라. 종업원 현황 및 상시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마. 옥외광고업 등록증 1부. (단, 변경 및 휴·폐업 등록에 한함)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등록증 교부	접수	
	검토	
	결재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옥 외 광 고 업 등 록 증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사 무 실 (본 사)		
	작 업 장 (사무소)		
영 업 내 용			
보유한 기술자격			
기 타		재 개업일 및 휴업기간, 변경등록일, 허가증 재교부일, 변경사항 등 기재	
상기인은 「옥외광고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3. 옥외광고조례

1) 시·도 옥외광고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광고물의 분류)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기타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애드벌룬”이란 기구 등에 직접 표시하거나 건물 및 지면 등에 매달아 공중에 띄워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2. “창호광고물”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창호나 건물의 유리면에 직접 표시하거나 매체를 이용하여 창호나 건물의 유리면을 통하여 공중에 보이도록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3. “현수막”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고정되게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4. “현수기”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그 일부만 고정시켜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5. “벽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6. “전단”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제3조(기타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영 제5조제3호의 단서에 따른 기타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의 절차 등) ①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영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을 사용하는 광고물과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1. 벽면광고물중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광고물 최대 길이가 2미터 이하이어야 한다)이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벽면에 돌출되게 표시한 광고물은 제외)
2. 옥상광고물중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지주광고물중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이고 최대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4. 교통광고물중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5. 기타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애드벌룬
6. 기타 시·군 또는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④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표시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디자인 안과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만을 첨부하고,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전자식발광·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과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동항 제5호의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허가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7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시설물 또는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등이 당해 건물·시설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특별시·광역시·자치도와 도의 시지역에서는 2개 이내,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지역에서는 3개 이내로 한다.
5.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창호광고물,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1업소 광고물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제6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건물벽면에 가로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과 최상층의 벽면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안과 16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에는 4층이상 10층이하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2층 이상 정면과 최상층의 벽면에는 평면이 아닌 방법으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곡각부분에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물벽면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1층에 현관 또는 층계나 승강기가 있는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 돌출폭은 20센티미터 이내의 평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광고물을 통합하여 나란히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광고물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2.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3층 이상 벽면에는 가로의 길이는 3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최대 길이는 10미터 이내)로 건물명에 한해서 평면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건물벽면에 돌출되게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물의 가로는 80센티미터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상업지역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광고물과 건물벽면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에 상하로 일직선상의 위치하도록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

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11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④건물벽면에 공연(공연중이나 다음공연내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은 건물의 10층이하에 표시하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최대 길이는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광고물은 벽면에 밀착하여 표시하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가로는 건물벽면 가로폭의 80퍼센트 이내(최대 길이는 15미터 이내), 세로는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 광고물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광고물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안에 벽면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상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광역시5층, 시4층, 군3층]으로 한다.
2. 광고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옥상광고물
- 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다.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3. 영 제9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평면이 아닌 방법이나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때에는 최고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광고물의 표시규격 산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0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광고물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광고물의 높이는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광고물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옥상 난간의 높이 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표시하는 광고물은 광고물간에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 ①당해 건물부지 밖의 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광고물이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

②공연내용을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아취 또는 탑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기둥길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아취 모양은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공공시설물 또는 편익시설물의 외부에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의 전기나 조명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이용상 불편하도록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2. 시설내부 벽면이나 시설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반드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제2조제1호에 따른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애드벌룬을 매달은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3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하거나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 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애드벌룬은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워야 하며,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4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3층 이하 창호나 유리면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안쪽에서 창호나 유리면에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호나 유리면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창호나 유리면의 내·외부에는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각종 표시물이나 네온·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제2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계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자기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2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3.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교통 및 보행에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 및 지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명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웨딩홀 건

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은 건물의 2층 이상 10층 이하의 창호나 환기구가 없는 벽면에만 표시하되, 가로길이는 당해 건물폭의 5분의1이내, 세로길이는 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20센치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은 건물의 폭과 상단을 초과할 수 없고,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지정계시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계시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계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계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계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연립형 지주(제3항에 의한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는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업소 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
- 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건물

⑤단일형 지주(하나의 지주에 현수기를 매달아 표시하는 형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외벽의 대지안의 공지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의 두께는 지름 10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5미터 이내로 하되 현수기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그 하단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주는 최대 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주간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지주에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하나의 지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하며, 2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현수기의 하단은 플라스틱·스텐레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의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①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 및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전기 또는 조명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자치구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광원 밝기와 빛의 색깔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각적인 충격이나 자극 또는 장애 등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7조(광고물 실명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 광고물
- 나.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아취 및 탑 모양의 광고물, 제12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실명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스티커 모양의 인식표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5. 제2호 전단에 따른 스티커 모양의 인식표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명표시 인식표는 허가증 및 변경 허가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광고물 실명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그 내용은 30일 이내에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물 총량제) ①영 제15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정면 입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는 건물 정면 입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외곽지역과 관광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신청은 당해 건물에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전에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광고물표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 받을 수 있다.

제19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취소 및 변경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7인 이상의 사업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당해 지역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제1호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후 주민협의회 구성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지정 신청서와 주민협의회 구성현황을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서를 교부하고, 자율관리지역의 명칭·관리자·운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하되, 이 기간까지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민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 단체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주민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와 “주민협회의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의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위원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자율관리지역내에서의 광고물 설치기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7일전까지 공청회 내용과 장소·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였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협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주민협회의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 감사 1인 등 총 5명의 운영진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협회의의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간사는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주민협회의는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자율관리지역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민협회의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제외한다.

제21조(세금감면 신청 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 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건물·토지내의 광고물 개선을 완료한 시점의 당해 연도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 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따른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광고물 개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 지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세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표시금지 지역 등) ①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장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영 제2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2. 교통안전시설물
3. 공중전화 부스
4.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5. 도로(인도 포함)의 노면

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벽면광고물
2. 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미만인 지주광고물

제24조(안전점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필증 또는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2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위탁기간·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임무 등을 포함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외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옥외광고업 종사자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업일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2항의 다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
3.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 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장부(별지 제7호서식)

제28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종사자 또는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9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실시코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실시 후 그 교육 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실시와 관련된 기타사항은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옥외광고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3조(심의안건 제출방법 등) 영 제33조제11호에 따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옥외광고 기금 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2. 안전점검의 기준 및 광고물에 대한 표준 설계도와 시방서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3.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
4. 자율관리지역내 주민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5. 옥외광고 관련단체 및 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
6.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 또는 학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활동 및 조사·연구비 등 지원
7. 시·군 또는 자치구 광고물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고물 및 가로경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그 밖에 옥외광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수수료) ①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6,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한 날
2.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한 날
3.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안전점검을 받아 합격판정을 받거나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날

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부담금의 납부기간) ①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인 광고물 표시를 허가받은 자(허가사항 변경 및 표시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취소한다.

제38조(부담금의 감면) ①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타광고물은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광고물을 말한다.

②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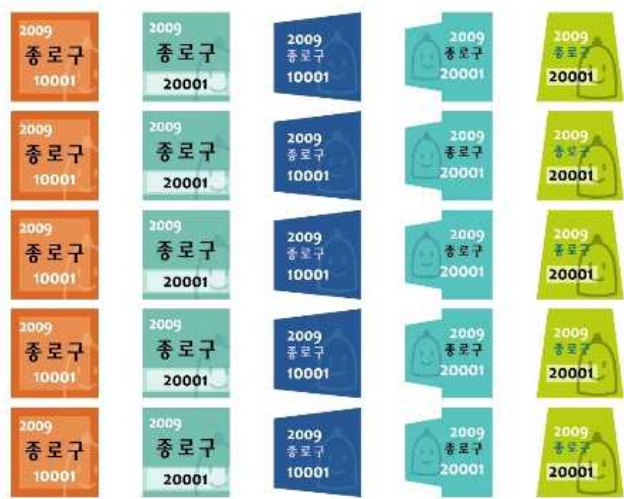
광고물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허가기간
1. 벽면광고물중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2년 이내
2. 지주광고물	
가.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2년 이내
나. 아취 또는 탐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30일 이내
3. 기타광고물	
가. 창호광고물	3년 이내
나. 현수막·현수기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
다. 벽보	15일 이내
라. 전단	15일 이내
마. 애드벌룬	60일 이내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현수막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별표 2】

광고물 실명표시 인식마크 예시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표 3】

옥외광고업자 시설기준

지역 구분		1종	2종	3종
		옥외광고 제작·설치 및 옥외광고 대행·임대		옥외광고 대행·임대
도시 지역	시 및 자치구	· 작업실 99.9제곱미터 이상 (공장등록필)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7인 이상	· 작업실 33.3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3인 이상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1인 이상
	군	· 작업실 166.5제곱미터 이상 (공장등록필)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7인 이상	· 작업실 99.9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3인 이상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1인 이상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	시 및 자치구	· 작업실 166.5제곱미터 이상 (공장등록필)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7인 이상	· 작업실 99.9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3인 이상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1인 이상
	군	· 작업실 330제곱미터 이상 (공장등록필) · 사무실 66.6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7인 이상	· 작업실 133.2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3인 이상	· 사무실 33.3제곱미터 이상 · 종업원 1인 이상

※ 유의사항

1.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외광고 제작·설치와 옥외광고 매체대행·임대를 병행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의 시설기준에 맞는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영업범위
 - 1종 : 도금액 1,000만원 이상의 옥외광고 제작·설치 및 매체대행·임대
 - 2종 : 도금액 1,000만원 미만의 옥외광고 제작·설치 및 매체대행·임대
 - 3종 : 옥외광고 매체대행 및 임대

【별표 4】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종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신규 교육	1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등 ◦ 디자인 및 색채 - 3시간 ◦ 설계 및 시공·구조 - 3시간 ◦ 도시미관 및 안전 - 3시간 ◦ 기타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 종사자 - 광고물 안전점검 수행자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등 ◦ 기타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 종사자 - 광고물 안전점검 수행자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등 ◦ 기타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 종사자 - 광고물 안전점검 수행자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함
기타 교육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새로운 옥외광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전에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5】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 수수료

(단위 : 원)

옥외광고물의 종류	단위	자치구·시지역	군지역
1. 벽면·옥상·지주·공공광고물 및 교통 광고물 중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개	5,000	4,000
2. 교통광고물 중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가.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나. 그 밖의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대	20,000	20,000
	대	2,000	2,000
3. 기타광고물 가. 애드벌룬 나. 창호광고·현수막·배너기 다. 벽보·벽보	개	10,000	8,000
	개	3,000	2,000
	건	3,000	2,000
4. 1부터 3까지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및 그 밖의 기타광고물	개	5,000	4,000
5. 광고물관리자 변경 및 허가증 재교부	건	1,000	1,000
6. 1부터 4까지의 광고물 중 상업광고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수수료의 3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7. 영 제36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기금조성 광고물에 대한 허가 수수료는 1부터 4까지의 광고물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에 부과되는 본 수수료의 3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8. 허가받은 광고물의 변경허가나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시에도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9. 다음 각 목의 광고물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지정벽보판과 지정게시대에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나. 국가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별표 6】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단위 : 원)

옥외광고물의 종류	단위	적 용 기 준	수수료
1. 벽면·옥상·지주·공공광고물 및 교통광고물 중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그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개	·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0,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현수막 게시시설	개	· 상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4분의1	
3. 상기 이외의 광고물		· 가장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	
4. 영 제36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기금조성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는 1부터 3까지의 광고물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을 적용한다.			
5. 허가받은 광고물의 변경이나 표시기간 연장시에도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수수료 산정방법

- (1)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 (2) 산정된 연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연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3) 전기 또는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그 게시시설의 외부에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의 전기나 조명을 광고물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한다.

【별표 7】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옥외광고업의 신규등록	업 소 당	30,000
옥외광고업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재개업 등록	업 소 당	15,000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업소명 변경 또는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업 소 당	5,000

【별표 8】

옥외광고물 표시 부담금 세부 부과기준

(단위 : 원)

광고물 종류	단위	기 준	자치구지역	시지역	군지역
1. 벽면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광고물	계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5,000	13,000	10,000
		•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16,000	14,000	11,000
		•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17,000	15,000	12,000
		• 연면적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8,000	16,000	13,000
		•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19,000	17,000	14,000
		•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20,000	18,000	15,000
		• 연면적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21,000	19,000	16,000
		• 연면적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2,000	20,000	17,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1제곱미터 미만	25,000	23,000	20,000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28,000	26,000	23,000
		• 연면적 12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31,000	29,000	26,000
		• 연면적 13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34,000	32,000	29,000
		• 연면적 14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	37,000	35,000	32,000
		• 연면적 15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40,000	38,000	35,000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17제곱미터 미만	43,000	41,000	38,000
		• 연면적 17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46,000	44,000	41,000
		• 연면적 18제곱미터 이상 19제곱미터 미만	49,000	47,000	44,000

		• 연면적 19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52,000	50,000	47,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5만원이상 5.5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5,000 +5,000	53,000 +4,000	50,000 +3,000
2. 공공광고물	계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 1.5만원이상 2만원에 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5,000 20,000 +5,000	13,000 18,000 +4,000	10,000 15,000 +4,000
3. 교통광고물	가. 교통시설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 1.5만원이상 2만원에 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5,000 20,000 +5,000	13,000 18,000 +4,000	10,000 15,000 +4,000
	나. 교통수단				
	① 비행선		1,000,000	1,000,000	1,000,000
	② 비행기·선박		100,000	100,000	100,000
	③ 자동차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 1.5만원이상 2만원에 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0,000 15,000 +5,000	10,000 15,000 +5,000	10,000 15,000 +5,000
4. 기타광고물		• 제외 : 현수막, 전단, 벽보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준용한다.			

※ 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연면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전부 합한 면적을 말한다.
- (2) 부담금 산정은 광고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를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연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벽면광고물중 벽면에 돌출되게(광고물의 최대외각선이 벽면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한 경우) 표시한 벽면광고물에 대하여는 해당 부담금과 해당 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에 커버를 씌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광고물은 해당 부담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적용하고, 광원을 게시시설 등과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광고물은 해당 부담금과 해당 부담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별표 9】

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자치구	시·군
1. 1업소에서 자기광고 1개만 설치한 경우	·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에 커버를 씌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표시한 광고물	100%이내	100%이내
	·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을 게시시설 등과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으로 외부에 노출시켜 표시한 광고물	50%이내	50%이내
2.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광고물 자율관리지역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100%이내	100%이내

【별표 10】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단위 : 원)

위 반 사 항	단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정점검을 신청한 자 : 100만원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개	· 30,000 · 50,000 + 1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20,000씩 가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기타광고물 중 애드벌룬 ·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을 또는 이와 유사 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 300만원 이하 가. 애드벌룬·현수막·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나. 벽보·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물 · 30장 이하 · 30장 초과 50장 이하 · 50장 초과	개 장	· 70,000 · 100,000 + 1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30,000씩 가산 · 장당 10,000 · 장당 15,000 · 장당 20,000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 : 500만원 이하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대	· 3,000,000 · 500,000

다. 자동차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 100,000 · 200,000 + 1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0,000씩 가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00만원 이하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200,000 · 500,000 · 1,000,000
5. 법 제10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 가. 30일 이하 경과 나. 30일 초과 90일 이하 다. 90일 초과 180일 이하 라. 180일 초과 1년 이하 마. 1년 초과		· 300,000 · 700,000 · 1,200,000 · 2,500,000 · 3,000,000
6.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장 밖에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300,000 · 500,000 · 1,000,000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 : 100만원 이하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300,000 · 500,000 · 1,000,000
8. 법 제13조에 따른 법령 등에 관한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100만원 이하	
가. 3년 이내 1회 위반자	• 300,000
나. 3년 이내 2회 위반자	• 500,000
다.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자	• 1,000,000

【별표 11】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단위 : 원)

※ 과태료 금액의 산정방법

- (1) 과태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 (2) 산정된 연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연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3) 전기 또는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그 게시시설의 외부에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의 전기나 조명을 광고물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한다.
- (4)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상습적으로 옥외광고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고금액 범위내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광고물 종류	단위	기 준	이행강제금 금액
1. 벽면광고물 및 지주광고물 : 300만원 이하	개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 70,000 • 100,000 + 1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0,000씩 가산
2. 옥상광고물, 공공광고물 및 교통광고물 중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 500만원 이하	개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 100,000 • 200,000 + 1제곱미터 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100,000씩 가산
3. 기타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준용한다. (단, 애드벌룬·현수막·배너기·벽보·전단을 제외한다)	

※ 이행강제금 금액의 산정방법

-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 (2) 산정된 연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연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3) 전기 또는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그 게시시설의 외부에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의 전기나 조명을 광고물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배를 부과한다.
- (4)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최고금액 범위내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5)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 1개 업소(사업체)에 최대 년 4회 이내까지 부과되,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총 부과금액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처 리 기 간	
				60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자율관리지역의 범위					
자율관리지역 운영기간		3년	6년	9년	10년 이상
<p>「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추진위원회 구성명단 1부. 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범위를 표시한 도면 1부. 3. 사업추진 주민동의서 (당해 지역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서			
관 리 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자율관리지역의 명 칭			
자율관리지역의 범 위			
자율관리지역의 운 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p>「옥외광고법」 제5조제1항,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p>			

【별지 제3호서식】

자율관리지역 세금 감면 신청서				처 리 기 간
				30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신 청 구 분		재산세 감면 사업자 소득세		
<p>「옥외광고법」 제6조제1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지역내에서 옥외광고물 개선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광고물 개선 전·후 현장사진 1부. 2. 전년도 사업자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또는 전년도 사업자 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 업무 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위탁신청 구분		신규 연장		
<p>「옥외광고법」 제9조제2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건축사 :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사본 1부. 2. 옥외광고업자 :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1부. 3.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4. 검사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10,000원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단 체 명		검 사 지 역
	소 재 지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p>「옥외광고법」 제9조제2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안전점검원 신분증

- 규 격 :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 바탕색 : 연녹색
- 글자색 : 검정색

<앞 면>

<뒷 면>

안전점검원

사 진
(3.5×4.5)

(성 명)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No.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자격기간 : . . . ~ . . .)

상기인은 「옥외광고법」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 고 주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내용				허가관련 정보	
	대표자 업소명	주 소 전화번호	표시장소 부착위치	종류 조명	수 량 규 격(m)	광고내용	허가번호	허가일 설치일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교육의 종류			
수강 년월일		수 강 장 소	
수 료 자	성 명	업 소 명	
	소 재 지		
<p>상기인은 「옥외광고법」 제13조제1항 및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실시 기관·단체장 ㉡)</p>			

【별지 제9호서식】

교육불참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교육대상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불참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구속수감 중 (), 예비군·민방위훈련(), 관혼상제(), 재난재해() 그 외()	
<p>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옥외광고법」 제13조제1항 및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광고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신고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위탁신청 구분		신규 연장		
<p style="text-align: center;">「옥외광고법」 제13조제3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업무의 위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10,000원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위탁 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단 체 명		
	소 재 지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p>「옥외광고법」 제13조제3항 및 「시·도 옥외광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업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p>			

2)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도 옥외광고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절차 등) ①영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 및 천공을 함으로서 허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시·도조례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규격과 형태·사용재료·구조·디자인 등이 동일한 설계도서와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2.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

제3조(광고물의 허가사항 분리) 영 제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만 허가를 받거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물·토지의 소유권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 및 변경·연장허가에 대하여는 광고주 또는 업소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애드벌룬의 수평거리) 시·도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애드벌룬간 수평거리는 자치구 또는 시지역은 1킬로미터 이상, 군지역은 1.5킬로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수막 표시의 예외) 시·도조례 제3조 및 제13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연속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벽보게시판의 설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벽보를 표시할 수 있는 벽보게시판을 설치·관리한다.

1. 벽보게시판의 사용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벽보게시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신청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날부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및 주민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해 지역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2. 주민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서 주민협의회와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지역내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존에 표시된 광고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지원은 주민협의회 또는 옥외광고 관련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 달 말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말에 잔여 예산과 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말일전까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한 후 그 내역을 정산하고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회계장부는 자체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업무 위탁대상 광고물)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허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2. 창호광고물·현수막·벽보 및 전단
3. 현수막·벽보를 표시하기 위한 지정게시시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허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금지 지역 등) 영 제2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파제
2. 낙석방지시설물
3. 도로(인도 포함)에 위치한 지하 매설물의 뚜껑
4.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10조(광고물 표시의 제한 및 완화 절차)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되는 지역 및 지구와 광고물의 표시완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안에서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
2. 광고물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사항
3. 광고물의 표시위치 등에 관한 사항
4.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옥외광고업자 관리) ①법 제10조제7항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관할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한 옥외광고업자에게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서류 및 시설기준·기술자격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의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가.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증가로의 길이가 5미터를 초과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점멸되면서 광고내용을 표시하거나 동영상으로 광고내용을 표출하는 전광류 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내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기

준 설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옥외광고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5항·제11항에 따른 옥외광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심의신청 절차 등) ①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은 허가신청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장 30일까지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옥외광고 기금 운용 등)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 사업
2.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3.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
4. 자율관리지역내 주민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5. 옥외광고 관련단체 및 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

6.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 및 가로경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그 밖에 옥외광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광고물의 제거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반환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광고물의 소유자 등이 볼 수 있도록 제거한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물로서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1. 광고물을 제거한 취지
2. 제거한 광고물의 보관장소
3. 광고물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과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때에는 게시판 또는 시·군·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제거한 광고물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5. 광고물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

옥외광고물 허가필 검인

허가번호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필 검인

< 표시기간 >

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현 수 막 : 가로 12센티미터 이상, 세로 8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압인·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관리지역 예산지원 신청서			처 리 기 간
			30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신 청 구 분	자율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 주민협의회 운영 및 자율관리지역 유지·관리 자율관리지역내 광고물 디자인 개선 자율관리지역내 불법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법」 제6조제2항 및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계획서 1부. (또는 옥외광고 관련단체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협약서 1부. 3. 비용산출 내역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업무 위탁 지정서				
수	대표자		생년월일	
탁	단체명			
자	소재지			
위탁내역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p>「옥외광고법」 제4조제5항 및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업무 위탁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p>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광 고 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광 고 물 설치 장소	()					
	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	수량		신청 구분	신규, 변경	
	광 고 물 규 격(m)			구 조 물 총 높이(m)			
	광 고 내 용						
시공업소	성 명			업 소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건 물 명			준 공 년 도			
	건 물 구 조 용 도 지 역			건 물 용 도			
	건 물 규 모			용 도 지 구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m)					
주변상황							
<p>「옥외광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p>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 11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7부.)						수 수 료	
						10,000원	

옥외광고물 제거 및 매각대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	옥외광고물 내역			보 관 내 역			반환(귀속) 연 월 일
	종 류	규격(m)	표시내용	보 관 장 소	보 관 연월일	매각금액 (또는 수량)	

옥외광고물 반환 청구서				처 리 기 간
				즉 시
청구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광 고 물 종 류			수 량	
표 시 내 용				
<p>「옥외광고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및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 조례」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옥외광고물 인수증</p>				
인수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광 고 물 종 류			수 량	
표 시 내 용				
광고물 매각금액		금	원정(제거한 광고물을 매각한 경우)	
<p>상기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4. 옥외광고법 개편(안) 종합대비표 (법, 시행령, 조례)

옥외광고법 개정안	옥외광고법시행령 개정안	시·도조례표준안	시·군·구조례표준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표시·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모든 종류의 매체를 말한다. 다만, 건물 등에 조명만을 사용하여 광고내용을 표출하지 않거나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매체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2. "게시시설"이란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을 직접 제작·표시·임대하거나 또는 그 표시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경형과 기술을 갖춘 자가 옥안이나 점점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옥상)과 기둥, 벽이 있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차고와 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벽면"이란 건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3. "정면"이란 도로폭이 3미터 이상인 보행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막다른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고 개별 업소 또는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 4. "광고내용"이란 성명·상호·상표·상품 및 영업내용(이미지·그림 및 사진을 포함한다)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표시"란 옥외광고물 또는 그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광고내용을 직접 부착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기광고"란 광고내용 중 자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도 옥외광고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는 행위를 말한다.</p>	<p>영업소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업광고”란 자기광고 이외의 모든 광고를 말한다.</p>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 :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2. 옥상광고물 :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과 승강기 탑 등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3. 지주광고물 : 지면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4. 공공광고물 :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5. 교통광고물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6. 기타광고물 :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옥외광고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p>제4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p>제2조(기타광고물의 분류)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기타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애드벌룬”이란 기구 등에 직접 표시하거나 건물 및 지면 등에 매달아 공중에 띄워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2. “창호광고물”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창호나 건물의 유리면에 직접 표시하거나 매체를 이용하여 창호나 건물의 유리면을 통하여 공중에게 보이도록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3. “현수막”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고정되게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4. “현수기”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그 일부만 고정시켜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5. “벽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벽면이나 각종 시설물 등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6. “전단”이란 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	---	--	--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p>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마. 「항공법」 제2조제1호·제25호·제25의3호에 따른 비행기, 초경량비행장치, 모의비행장치 		
--	--	--	--

<p>성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p> <p>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7. 우수 옥외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광고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등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장 옥외광고물 관리</p> <p>제4조(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①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p>	<p>제2장 옥외광고물 관리</p> <p>제5조(허가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표시가 법 제7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7조부터 제15조에 적합할 것 3.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의할 	<p>제3조(기타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영 제5조제3호의 단서에 따른 기타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과 같다.</p>	
---	---	--	--

<p>또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기타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4조(허가의 절차 등) ①영 제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서류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허가의 절차 등) ①영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 및 천공을 함으로서 허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3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은 전산 및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p>②시·도 조례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규격과 형태·사용재료·구조·디자인 등이 동일한 설계도서와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2.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
<p>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광고물의 실명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 2. 광고물 설계도서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3. 광고물 디자인 안 4. 옥상 또는 지주광고물중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p>②영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조(광고물의 허가사항 분리) 영 제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만 허가를 받거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물의 소유권자나 토지의 소유권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 및 변경·연장허가에 대하여는 광고주 또는 업소주가 신청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통수단이 2 이상의 시·도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자라 함은 소유자로 부터 토지나 물건 등의 관리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온라인 공인인증서 등에 의하여 승낙받은 증명사항도 포함한다) 6.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p>③영 제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을 사용하는 광고물과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중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광고물 최대 길이가 2미터 이하이어야 한다)이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벽면에 돌출되게 표시한 광고물은 제외) 2. 옥상광고물중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지주광고물중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이고 최대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허가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허가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p>	<p>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p>		

<p>권자”라 한다)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허가권자가 제5조 허가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 표시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산 및 온라인으로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 제3호의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업광고를 표시한 광고물과 제22조에 따른 안전도검사 제외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만료일 30일 이내에 제1항제5호의 서류(자기광고를 제외한다) 및 그 주변의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허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이전 등으로 허가받은 광고물을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물이 정비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p>	<p>4. 교통광고물중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p> <p>5. 기타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애드벌룬</p> <p>6. 기타 시·군 또는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p> <p>④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표시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디자인 안과 광고물이 설치될 주변의 현장사진만을 첨부하고,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중 전자식발광·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과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다.</p> <p>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동항 제5호의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허가처리를 하여야 한다.</p>	
---	--	--

	<p>간 종료 6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표시기간이 90일 이내인 광고물을 제외한다.</p> <p>⑨광고물의 표시허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⑩그 밖에 광고물 표시에 관한 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p> <p>②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광고물 총 수량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광고물에 표시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p> <p>④광고물은 보행·교통 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의 압력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⑤광고물에는 형광 및 야광도료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p> <p>⑥지면이나 건물, 공작물, 교통수단(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고정되지 않고 그 자체가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p> <p>⑦광고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p>	<p>제5조(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7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시설물 또는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등이 당해 건물·시설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도의 시지역에서는 2개 이내,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와 군 지역에서는 3개 이내로 한다. 5.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창호 광고물,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1업소 광고물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	--	---	--

	<p>라 피뢰설비를,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각각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p> <p>⑧제1항 부터 제7항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①광고물은 건물 등의 창호이나 출입구를 막을 수 없고, 건물벽면의 가로폭과 높이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p> <p>②건물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돌출되게 표시하는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10층 이하에만 표시하되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다.</p> <p>③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제9조에 따른 옥상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는 당해 건물벽면의 4층 이상 15층 이하의 측면 또는 후면(출입구가 있는 벽면을 제외한다)중 하나의 벽면에 상업광고를 표시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제19조5항을 준용하며,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④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6조(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건물벽면에 가로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돌출할 수 없다. 2.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과 최상층의 벽면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안과 16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에는 4층이상 10층이하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2층 이상 정면과 최상층의 벽면에는 평면이 아닌 방법으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곡각부분에 2면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p>②건물벽면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1층에 현관 또는 층계나 승강기가 있는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 돌출폭은 20센치미터 이내의 평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광고물을 통합하여 나란히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광고물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2.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3층 이상 벽면에는 가로의 길이는 3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최대 길이는 10미터 이내)로 건물명에 한해서 평면이 아닌 	
--	--	---	--

		<p>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③건물벽면에 돌출되게 표시하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물의 가로는 80센티미터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상업지역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광고물과 건물벽면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에 상하로 일직선상의 위치하도록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11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p>④건물벽면에 공연(공연중이나 다음공연내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은 건물의 10층이하에 표시하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최대 길이는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광고물은 벽면에 밀착하여 표시하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⑤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벽면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p>	
--	--	--	--

	<p>제9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옥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하 “자기건물”이라 한다) 2. 종교시설에서 직접 사용중인 건물 <p>②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하고, 최저층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광고물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최대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광고물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⑤광고물(제8조제3항에 따른 벽면광고물</p>	<p>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가로는 건물벽면 가로폭의 80퍼센트 이내(최대 길이는 15미터 이내), 세로는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 광고물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광고물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안에 벽면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p>제7조(옥상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상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광역시5층, 시4층, 군3층]으로 한다. 2. 광고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옥상광고물 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3. 영 제9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	--	---	--

<p>도 포함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⑥광고물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광고물에 한한다)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이고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1면인 경우에 한한다)과 건물옥상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p> <p>⑦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p> <p>⑧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p>⑨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평면이 아닌 방법이나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때에는 최고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p> <p>②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광고물간의 수평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옥상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상광고물의 표시규격 산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 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광고물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광고물의 높이는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광고물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 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 	
---	--	--

	<p>제10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 지면으로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하되, 지주광고물이 표시되는 동일한 지역 또는 장소에 있는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동일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하나의 지주에 광고물을 나란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나란히 표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주의 끝부분(광고물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인 때에는 광고물의 끝부분을 말한다)은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유지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끝부분은 보도 또는 차도의 경계선 밖으로 돌출되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광고물에 외부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의 전기나 조명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p> <p>⑤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우에는 옥상 난간의 높이 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p> <p>2.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표시하는 광고물은 광고물간에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 ①당해 건물부지 밖의 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물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광고물이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2.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p> <p>②공연내용을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만 표시하여야 한다.</p> <p>2. 광고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③아취 또는 탑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물의 기둥길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p> <p>2. 아취 모양은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p>	
--	--	--	--

	<p>제11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3.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벽보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p>②공공광고물은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물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시·도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3.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p>제12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제4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외부에 표시하는 때에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2.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때에는 제7조 	<p>표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제9조(공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지통 2. 벤치 <p>②공공시설물 또는 편익시설물의 외부에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의 전기나 조명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10조(교통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이용상 불편하도록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	---	---	--

	<p>제1항에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②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창호 부분을 제외한 교통수단 외부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되,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제14조에 따른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이 교통수단에 밀착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 각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화물자동차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p>③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13조(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 기타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시설내부 벽면이나 시설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반드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p>②시·도지사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1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제2조제1호에 따른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애드벌룬을 매달은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 	<p>제4조(애드벌룬의 수평거리) 시·도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애드벌룬간 수평거리는 자치구 또는 시지역은 1킬로미터 이상, 군지역은 1.5킬로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p>
--	--	--	--

		<p>시 후 3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p> <p>4.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p> <p>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하거나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p> <p>6. 애드벌룬은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워야 하며,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4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창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1. 건물의 3층 이하 창호나 유리면에만 표시하여야 한다.</p> <p>2. 건물의 안쪽에서 창호나 유리면에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호나 유리면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p> <p>3. 건물의 창호나 유리면의 내·외부에는 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각종 표시물이나 네온·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p>	
--	--	---	--

		<p>안된다.</p> <p>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제2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내용은 자기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2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3.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교통 및 보행에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 및 지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명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p>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웨딩홀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은 건물의 2층 이상 10층 이하의 창호나 환기구가 없는 벽면에만 표시하되, 가로길 	<p>제5조(현수막 표시의 예외) 시·도 조례 제3조 및 제13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연속 표시할 수 있다.</p>
--	--	--	---

		<p>이는 당해 건물폭의 5분의1이내, 세로길이는 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20센치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은 건물의 폭과 상단을 초과할 수 없고,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p>④연립형 지주(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는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 	
--	--	--	--

		<p>야 하며, 업소 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p> <p>3.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p> <p>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p> <p>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p> <p>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p> <p>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건물</p> <p>⑤단일형 지주(하나의 지주에 현수기를 매달아 표시하는 형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의 두께는 지름 10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5미터 이내로 하되 현수기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그 하단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주는 최대 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주간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지주에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하나의 지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하며, 2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현수기의 하단은 플라스틱·스텐레 	
--	--	--	--

	<p>제14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①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안전하게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4.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은 광원에 커버를 씌워 외부에 노출 	<p>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의한다. <p>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p>제16조(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 ①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 및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p>제6조(벽보게시판의 설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벽보를 표시할 수 있는 벽보게시판을 설치·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보게시판의 사용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벽보게시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p>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게시 시설 등과 따로 설치하여 간접 조명 방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화면 변환·동영상 또는 점멸방식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건물부지내 지주광고물을 점멸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을 제외한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p> <p>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p> <p>5.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광원 밝기와 색깔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②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단순한 문자나 도형 등의 화면변환 방식 또는 점멸방식을 제외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출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전기 또는 조명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자치구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 또는 조명의 광원 밝기와 빛의 색깔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각적인 충격이나 자극 또는 장애 등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p>④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	---	--	--

	<p>③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과 제1항에 따른 전기 또는 조명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에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④그 밖의 전기 또는 조명의 추가적인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광고물 실명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 광고물 나.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아취 및 탑 모양의 광고물, 제12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실명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스티커 모양의 인식표로 하고, 표시 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5. 제2호 전단에 따른 스티커 모양의 인식표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명표시 인식표는 허가증 및 변경 허가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광고물 실명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옥외광고위원회의 	
--	--	---	--

<p>제5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p>	<p>제15조(광고물 총량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규모에 따른 건물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p>제16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범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p>	<p>심의를 거쳐 정하며, 그 내용은 30일 이내에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8조(광고물 총량제) ①영 제15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정면 입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는 건물 정면 입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외 관광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자치구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신청은 당해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③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전에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광고물표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광고물의 설치수량과 표시면적을 제한하거나 완화 받을 수 있다.</p>
---	---	--

<p>관리를 위하여 광고물의 수량과 표시규격 등 광고물 표시기준을 주민자율로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 따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지정 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300미터 이상의 도로변 구간 2. 20개 이상의 건물 또는 50개 이상의 업소가 도로변에 접하여 길게 이어져 있거나 불력을 형성하여 모여있는 지역 <p>제17조(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간 또는 불력 단위로 명확하게 선정할 것 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내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것 <p>②특별자치도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와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 단체가 “광고물 	<p>제19조(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취소 및 변경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7인 이상의 사업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당해 지역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제1호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후 주민협의회 구성현황을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지정 신청서와 주민협의회 구성현황을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서를 교부하고, 자율관리지역의 명칭·관리자·운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관리지역</p>	
--	---	--	--

	<p>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p> <p>2.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협의회에서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와 “주민협의회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3. 자율관리지역내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p> <p>④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자율관리지역의 유지 및 관리는 지역 주민의 자율참여방식으로 하되, 그 운영기간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최소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p> <p>⑤그 밖에 자율관리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8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협의회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하되, 이 기간까지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주민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 단체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p> <p>④주민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와 “주민협의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의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위원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자율관리지역내에서의 광고물 설치기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⑥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7일전까지 공청회 내용과 장소·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였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p> <p>1. 주민협의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p>
--	--	--

<p>자 중에서 자율관리지역내 20인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자율관리지역내 건물 소유권자 3. 자율관리지역내 토지 소유권자 4. 당해 지역내 옥외광고 관련단체 임원 5.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p>②주민협의회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의 지정 신청 2. 당해 지역 옥외광고 관련단체와 “광고물 디자인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서” 체결 3.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당해 사업지역내 주민의 4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주민협정서” 작성 및 의결 4. 개선된 광고물과 가로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5. 특별자치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주민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심의의결 <p>③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장 2인 간사 1인, 감사 1인 등 총 5명의 운영진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간사는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②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자율관리지역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제외한다.</p>	<p>장 2인 간사 1인, 감사 1인 등 총 5명의 운영진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간사는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②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지역내 건물별·업소별 광고물 규격 및 수량 등 광고물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자율관리지역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제외한다.</p>
<p>제6조(세금감면 및 예산지원)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또는 사업자소득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관리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광고물 디자인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p>	<p>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세금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자 : 「지방세법」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또는 사업자 소득세의 30퍼센트 범위 2. 자율관리지역내에서 지정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부과 	<p>제21조(세금감면 신청 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건물·토지내의 광고물 개선을 완료한 시점의 당해 연도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p>

<p>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되는 광고물 표시 부담금 전액 ②제1항에 따른 세제감면의 세부적인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물관리지역 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광고물 개선에 따른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광고물 개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세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p>	<p>제7조(예산지원 신청절차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날부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 및 주민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해 지역내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2. 주민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서 주민협의회와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지역내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존에 표시된 광고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p>제20조(예산지원) ①자율관리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율관리지역 및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와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서 주민협의회와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와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21조(허가 업무의 위탁) ①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허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2. 기타광고물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3. 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지원은 주민협의회 또는 옥외광고 관련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 달 말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말에 잔여 예산과 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말일전까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한 후 그 내역을 정산하고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회계장부는 자체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p>제8조(허가업무 위탁대상 광고물)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허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벽면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2. 창호광고물·현수막·벽보 및 전단 3. 현수막·벽보를 표시하기 위한 지정 게시시설
--	--	--	---

<p>제7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p> <p>①누구든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광고물과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할 수 없는 광고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색깔 또는 형태의 광고물 나.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다. 파손되었거나 붕괴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 라. 오염되었거나 변색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아름답고 좋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생활습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보호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p>·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지정게시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단체 2.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업무를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절차를 준용한다.</p> <p>제22조(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완화)</p> <p>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장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공서·공공기관·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2.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다. 4. 도로교통의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지역·장소 <p>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2.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 	<p>제22조(표시금지 지역 등) ①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장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장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p>②영 제2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2. 교통안전시설물 3. 공중전화 부스 4.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5. 도로(인도 포함)의 노면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허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9조(표시금지 지역 등) 영 제2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상업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파제 2. 낙석방지시설물 3. 도로(인도 포함)에 위치한 지하 매설물의 뚜껑 4.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	---	--	--

<p>라.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p> <p>마.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p> <p>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p>	<p>기·횡단보도안전표시등 및 보도책</p> <p>3. 전주</p> <p>4. 가로수</p> <p>5. 동상 및 기념비</p> <p>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p> <p>7. 우편함·소화전·지상변압기함 및 화재경보기</p> <p>8. 전망대 및 전망탑</p> <p>9. 건물 등의 기둥·담장·울타리(가설 울타리를 포함한다)</p> <p>10. 재배중인 농작물</p> <p>1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집합건물 등의 공기조절장치</p> <p>12. 도로교통의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p>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업활동의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등에는 당해 관할 지역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1.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 할 수 있는 지역</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p> <p>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p> <p>2.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지구</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시설보호지</p>		<p>제10조(광고물 표시의 제한 및 완화 절차)</p> <p>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되는 지역 및 지구와 광고물의 표시완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안에서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p> <p>2. 광고물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사항</p> <p>3. 광고물의 표시위치 등에 관한 사항</p> <p>4. 전기 또는 조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p>

<p>제8조(적용제외 및 특례) ①비영리 목적으로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광고물</u>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u>표시하는 광고물</u> 2.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축제 또는 행사를 위하여 <u>표시하는 광고물</u>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u>표시하는 광고물</u>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u>광고물</u> 5. 국가등에서 축제 등 각종 행사와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u>표시하는 광고물</u> <p>②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국가등에서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u>광고물의 표시</u>관련 특례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u>광고물 표시위치 및 광고물의 종류·수량·규격 등</u></p>	<p><u>구·경관지구 및 보존지구</u></p> <p>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u>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u></p> <p>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u>생태계보전지역</u> 및 제28조에 따른 <u>자연유보지역</u></p> <p>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u>공원 중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u></p> <p>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u>보안림</u></p> <p>바. 그 밖에 제1호 각목 외의 지역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u>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지역</u></p>		
--	--	--	--

<p>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광고물의 표시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 3. 국가등에서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안내 등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 <p>제9조(안전점검) ①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④제2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p>	<p>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등에 광고내용을 직접 표현한 광고물 2. 광고내용을 표시한 비닐·천·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건물 등에 밀착하여 직접 부착하거나 배부 또는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3.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p>제24조(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표준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표준 설명서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3조(안전점검의 예외)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벽면광고물 2. 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미만인 지주광고물 <p>제24조(안전점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필증 또는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점검을</p>	
--	--	---	--

	<p>③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였을 때.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같음한다. 2.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3.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p>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제1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호 각목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의 신청 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했거나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위치를 변경한 때 : 표시 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나.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2. 안전점검 신청시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광고물 설계도 및 광고물의 제작·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다만, 허가 신청시에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및 도서 다. 광고물 표시 허가증 사본 <p>⑤허가권자는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안전점검표를 첨부하여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허가권자는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p>	<p>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	--	--

<p>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이하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p>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각 1인 이상.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각종 실측·점검장비 및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p>③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2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2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위탁기간·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임무 등을 포함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외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옥외광고업 관리</p> <p>제1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과 시설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③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을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업무를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개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로 영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산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p> <p>⑤옥외광고업자는 그 영업소 안에 광고물의 제작·설치 등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⑥옥외광고업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장 밖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⑦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용양속의 유지, 공중</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옥외광고업 관리</p> <p>제26조(등록의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자격과 시설기준은 별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제2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신규등록에 한한다) 2.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개인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가 제26조제1호 별표3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종업원 현황 및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옥외광고업 등록증(변경등록에 한한다) <p>②제26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허가한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옥외</p>	<p>제2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 종사자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업일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p> <p>③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7조제2항의 다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 3.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 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장부(별지 제7호 서식) 	<p>제11조(옥외광고업자 관리) ①법 제10조제7항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p>
--	---	--	--

<p>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u>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광고업자는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재개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를 위하여 관할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한 옥외광고업자에게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광고물 제작·설치 및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록한 서류 및 시설기준·기술자격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u>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폐업 신고시 : 옥외광고업 등록증 2. 재개업 신청시 :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p>⑥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재개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⑦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설립) ①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p>제28조(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정관)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 단체 및 연합회(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p>2.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령 등에 관한 교육 등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p> <p>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p> <p>④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필한 자</p> <p>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p> <p>⑤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각 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옥외광고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p> <p>제13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및 디자인, 설계·시공, 안전점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관한 사항</p> <p>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p> <p>7. 사업에 관한 사항</p> <p>8. 회비에 관한 사항</p> <p>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p> <p>10.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p> <p>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12. 해산에 관한 사항</p> <p>13. 기타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p> <p>②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9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p> <p>2. 옥외광고업자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p> <p>3. 신규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p> <p>4. 관계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p> <p>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내용·시간·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28조(법령 등에 관한 교육) ①시·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종사자 또는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p> <p>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p> <p>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p> <p>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p> <p>③시·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고,</p>	
--	---	--	--

	<p>제30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 방법(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시·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⑥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p>제29조(교육 업무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실시코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업무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의 위탁기간은 3</p>	
--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옥외광고 진흥</p> <p>제1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 ①광고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옥외광고 진흥</p> <p>제31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 	<p>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30조(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실시 후 그 교육 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교육실시와 관련된 기타사항은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p>	
--	--	--	--

<p>6.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옥외광고 센터에서 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심의</p> <p>7. 그 밖에 광고물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협이 풍부한 자</p> <p>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p> <p>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p> <p>⑧정책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⑨제1항부터 제8항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옥외광고위원회) ①광고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p>	<p>제32조(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①시·도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p>		<p>제12조(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의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p>

<p>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자율관리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②시·군 또는 자치구(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조정한다.</p> <p>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 2. 시·군·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p> <p>제33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p>	<p>제31조(옥외광고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p>	<p>가.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증가로의 길이가 5미터를 초과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점멸되면서 광고내용을 표시하거나 동영상으로 광고내용을 표출하는 전광류 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내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13조(옥외광고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5항·제11항에 따른 옥외광고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p>
--	--	---	--

	<p>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p> <p>1. 옥외광고·디자인·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언어·디자인·색채 등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p> <p>3.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p> <p>4.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언론매체 대표</p> <p>5.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시·도 위원회에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시·도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시·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다.</p> <p>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5. 소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제32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p> <p>2.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다.</p> <p>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5. 소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제14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p> <p>2.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	--	---	--

	<p>⑨시·도 위원회는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는 시·군·구로, "시·도 조례"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본다.</p> <p>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자율관리지역 주민협의회 임원 2. 당해 자율관리지역이 속하는 동의 주민자치 위원 3. 그 밖에 광고물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p>⑫그 밖에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제34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 또는 시</p>	<p>제33조(심의안건 제출방법 등) 영 제33조 제11호에 따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심의신청 절차 등) ①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은 허가신청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장 30일까지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그 밖에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	---	---

<p>제16조(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광고물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u>옥외광고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 관련 사항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p>·도 및 시·군·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

<p>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p> <p>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⑦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p> <p>⑧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⑨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⑩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①국가등은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제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금지·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고물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을 제외한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p>	<p>제35조(국가등의 옥외광고사업) ①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4와 같다.</p> <p>②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군·자치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사용한다.</p> <p>③센터는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p>		
--	--	--	--

<p>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센터가 이를 수행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위치·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광고물 표시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배분비율·용도 및 그 밖의 수익금의 배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p> <p>④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p> <p>제36조(기금조성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p> <p>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7조 부터 제14조에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p> <p>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센터는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전에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센터는 제3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의 규격·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제3호</p>		
--	--	--	--

<p>제18조(옥외광고 기금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광고물 관리업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도 옥외광고 기금(이하 “시·도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시·도 기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로 배분되는 수익금 나.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라. 국가로 부터의 보조금</p> <p>2. 시·도 기금은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로경관의 개선·법령 등에 관한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3. 시·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군·자치구 옥외광고 기금(이하 “시·군·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p>	<p>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광고 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에 갈음한다.</p>	<p>제34조(옥외광고 기금 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 2. 안전점검의 기준 및 광고물에 대한 표준 설계도와 시방서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3.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 4. 자율관리지역내 주민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5. 옥외광고 관련단체 및 광고물 공동 제작단지 조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 6. 옥외광고 관련 시민단체 또는 학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활동 및 조사·연구비 등 지원 7. 시·군 또는 자치구 광고물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고물 및 가로경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그 밖에 옥외광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옥외광고 기금 운용 등)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 사업 2.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 3.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 4. 자율관리지역내 주민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5. 옥외광고 관련단체 및 광고물 공동제작단지 조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 6.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 및 가로경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그 밖에 옥외광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야 한다.</p>
---	--	--	---

<p>나.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다.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라. 제2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마.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사.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의 보조금</p> <p>2.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은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로경관의 개선·법령 등에 관한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3. 시·군 또는 자치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장 수수료 및 부담금 제19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 등록 신청시에 각각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제4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허가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안전점검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p>제35조(수수료) ①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6,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광고물 표시 부담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부과대상·부과기준·부과금액·부과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부담금 제37조(부담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신청한 때 2.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규격이나 사용자재를 변경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한 때 3.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 	<p>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표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한 날 2.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한 날 3.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안전점검을 받 	

<p>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의 난립방지와 도시미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등이 광고물을 표시한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p> <p>④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p> <p>⑤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이 표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중 100분의 30을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배분한다.</p> <p>⑦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⑧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③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부담금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계 법령 3. 부담금 산출근거 및 납부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5. 그 밖에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p> <p>제38조(부담금의 감면) ①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광고물을 1개만 설치한 경우 2. 자율관리지역에서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3. 기타광고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p>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39조(부담금의 부과실적 등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매월 그 부과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p>	<p>아 합격판정을 받거나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날</p> <p>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37조(부담금의 납부기간) ①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인 광고물 표시를 허가받은 자(허가사항 변경 및 표시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p> <p>③허가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1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취소한다.</p> <p>제38조(부담금의 감면) ①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타광고물은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광고물을 말한다.</p> <p>②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 9와 같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행정처분</p> <p>제21조(허가의 취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 3. 제7조 따른 광고물의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5.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p>제22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 	<p>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부담금의 부과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과실적 등을 매년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금의 부과실적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행정처분</p> <p>제40조(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①법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1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처분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p>		
--	--	--	--

<p>치명령을 위반한 때</p> <p>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표시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p> <p>4.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p> <p>제23조(청문)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제21조에 따른 광고물 표시에 대한 허가 소</p> <p>2.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p> <p>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전점검을 신청한 자.</p> <p>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p> <p>3.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p>	<p>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 조직 등을 통하여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및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2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①처분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허가 또는 안전점검을 신청한 자 : 100만원 이하</p> <p>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기타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 300만원 이하</p> <p>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00만원 이하</p>	<p>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	--	--	--

<p>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p> <p>5. 제10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p> <p>6.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p> <p>7.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p> <p>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이하 “처분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처분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⑤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⑥처분당사자는 처분권자로부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p> <p>⑦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p>	<p>4.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 : 500만원 이하</p> <p>5.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p> <p>6.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장 밖에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p> <p>7.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p> <p>8. 법 제13조에 따른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100만원 이하</p> <p>②처분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p> <p>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과태료 금액</p> <p>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p> <p>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p> <p>5.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처분권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p> <p>2.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p>		
--	--	--	--

<p>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처분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p> <p>2. 처분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⑧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 통보를 받은 법원은 즉시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⑨ 처분권자는 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처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⑩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⑪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p> <p>제25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그 광고물의 표시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관리자·대리인(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의 제거·보완·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p> <p>4.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p> <p>⑤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	--	--

<p>1.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p> <p>2.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p> <p>3. 제4조에 따라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허가사항 이외의 싸인볼·조명 튜브·통신안테나·간접조명기구 등을 부착하였거나 안전사고와 화재위험 등이 우려되는 광고물</p> <p>4. 제5조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내에서 주민자율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p> <p>5.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p> <p>6.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p> <p>7.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받은 광고물</p> <p>②처분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광고물관리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고한 후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붕괴·추락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중 광고물관리자의 전화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p>			
---	--	--	--

<p>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⑦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p> <p>⑧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과 제2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광고물의 광고물관리자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⑨제8항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 제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처분권자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p>	<p>제4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그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및 옥외광고업자(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거과정에서 훼손되어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다.</p>		<p>제17조(광고물의 제거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시각공해와 위해를 방지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18조(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반환 등)</p> <p>①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광고물의 소유자 등이 볼 수 있도록 제거한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물로서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을 제거한 취지 2. 제거한 광고물의 보관장소 3. 광고물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p>②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거한 광</p>
--	---	--	---

<p>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과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보관한 때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구보에 그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을 광고물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광고물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⑦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을 반환받을 광고물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은 당해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p> <p>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p>	<p>고물과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때에는 게시판 또는 시·군·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거한 광고물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5. 광고물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 <p>③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p>
<p>제27조(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25조</p>	<p>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p>	<p>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p>

<p>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관리자(제26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받는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은 1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기준은 별표 11과 같다.</p>	
<p>②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하 “처분당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1. 벽면광고물 및 지주광고물 : 300만원 이하 2. 옥상광고물 및 공공광고물 : 500만원 이하 3. 교통광고물(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및 기타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p>		
<p>③처분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업소명 및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및 이행강제금 금액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⑤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p>	<p>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와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관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④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p>		

<p>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준용한다. ⑤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⑥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⑦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행강제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p>			
<p>제7장 벌칙 등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 다만, 현수막·벽보·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p>			
<p>2.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p>			
<p>3.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p>			
<p>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30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